

한국사연구회

제342차 월례발표회

자 료 집

일시 : 2022년 6월 11일(토) 15:00~17:10

장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 및
ZOOM(대면·비대면 동시진행)

<https://korea-ac-kr.zoom.us/j/2532664989?pwd=aGdWNFBvR3M0aHdqUGE5clgwWXVldz09>

식 순

사회: 김보광(가천대)

제1발표 15:00~16:00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과 한성자치론의 대두

발표 : 양진아(국민대 정보와 법 연구소)

토론 : 김소영(건국대)

휴식 16:00~16:10

제2발표 16:10~17:10

1939년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분열과 그 귀결

발표 : 박영훈(성균관대)

토론 : 박준현(국가보훈처)

목 차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과 한성자치론의 대두

- 발표문 : 양진아(국민대 정보와 법 연구소) 1
- 토론문 : 김소영(건국대) 16

1939년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분열과 그 귀결

- 발표문 : 박영훈(성균관대) 18
- 토론문 : 박준현(국가보훈처) 36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과 한성자치론의 대두

양진아(국민대 정보와 법 연구소)

1. 머리말
2. 지방합병 계획과 좌절
3. 한성과세 시도와 한성자치론의 대두
4. 맺음말

1. 머리말

개항 이후 지방자치론은 근대 민권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근거로 주목받아 왔다.¹⁾ 자치라는 외형에서 포착되는 민주성은 지방자치론의 성격을 구분하는 잣대로 지방자치론이 민권적인지 혹은 관치보조적인지를 판가름했다. 이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점차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론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인들의 지방자치론은 민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과 보호국 체제에 순응해 통감부의 통치에 협조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이해되었다.²⁾

하지만 지방자치론은 어느 쪽이든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제기한 정치적 자구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통감 통치 초기까지만 해도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상 한일병합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³⁾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식민지민이 아닌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한 때 한국인들은 지방자치를 입헌군주제 수립을 위한 발판으로 또는 현상 유지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보장받는 통로로 생각하고 제도화

1) 尹貞愛, 1985, 「韓末 地方制度 改革의 研究」, 『歷史學報』 105 ; 李相燦, 1989, 「1894~5년 地方制度 개혁의 방향 - 鄉會의 법제화 시도를 중심으로 -」, 『震檀學報』 67 ; 유정현, 1992, 「1894~1904年 地方財政制度의 改革과 吏胥層 動向」, 『震檀學報』 73 ; 鄭銀景, 1996, 「甲午改革의 鄉會制度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金泰雄, 1997, 「근대 중국·일본의 地方自治論과 韓末의 지방자치 문제」, 『歷史教育』 64 ; 金翼漢, 2000, 「지방자치제의 추이」, 『한국사』 44, 국사편찬위원회.

2) 李相燦, 1986, 「1906~1910년의 地方行政制度 변화와 地方自治論議」, 『韓國學報』 42 ; 金泰雄, 위의 논문 ; 金翼漢, 위의 논문.

3)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병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그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1907년 7월 정미조약의 체결, 같은 해 8월 군대해산은 실질적으로 한일병합과 다름없었으나 일본은 한국인의 저항운동과 국제정세, 일본정부 내 다수 의견을 고려해 형식상으로는 보호국 체제를 유지시켰다. 하지만 의병운동이 본격화되는 1907년 하반기부터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은 점차 병합론으로 기울어 갔고, 일본 내각에서는 1909년 7월에 ‘한국병합에 관한 건’을 결정했다. 방광석, 2010, 「일본의 한국침략정책과 伊藤博文 - 統監府 시기를 중심으로 -」, 『日本歷史研究』 32, 14~20쪽.

를 위해 노력했다. 일본이 한일병합 방침을 확정한 이후에는 지방자치가 한국인이 식민지 체제를 인정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다양한 논자들이 지방자치제를 통감 통치 또는 한일병합의 정치적 돌파구로 주장하는 가운데 특히 수도 한성에서 자치제 실시를 주장하며 활동한 단체가 한성부민회(漢城府民會)이다. 한성부민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러일전쟁 이후 한국인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론의 현실태로 다뤄졌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노력한 점 외 통감 통치에 협조적이었던 점이 지적되었다.⁴⁾ 회장이 유길준(兪吉濬)이었기 때문에 한성부민회를 유길준이 자신의 이상인 입헌군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보거나⁵⁾ 국권이 상실해 가는 과정에서의 실력 양성운동 단체 또는 자강운동 단체로 보기도 한다.⁶⁾

그런데 한성부민회의 창립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한국민의 지방자치론으로 설명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907년 10월의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을 봉영(奉迎)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설단체 한성부민회가 갑자기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1908년 5월에 동명의 상설단체로 개편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당시 지방자치론이 주장되는 가운데 특별히 한성의 자치를 위한 단체가 설립된 배경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것이다. 수도로서 갖는 대표성 때문에 전국적 자치제 실시의 시범으로 한성이 설정된 것으로 설명되지만 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이 가미되어야 한성부민회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나아가 당시 지방자치론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통감부기 지방자치제 실시를 주장한 한국민 단체 한성부민회가 창립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성부민회 창립 배경이자 지방자치론의 하나로 대두된 한성자치론을 분석하고 한성자치론이 제기된 경위로 통감부의 한성과세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통감부가 한성과세를 시도한 이유는 지방합병 계획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지방합병에 대해서는 통감부의 지방제도 개편 작업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다루지거나⁷⁾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지방지배정책 연구의 전사로 다루진 바 있다.⁸⁾ 특히 1894~1910년 지방세제 시행에 대해 천착한 연구⁹⁾에서는 지방세제 시행 배경으로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을 다루고 한국 지식인들이 지방자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방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지방합병 계획, 지방세제, 지방자치제의 관계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 글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과 한성과세 시도를 한성자치론을 대두시킨 출발점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4) 李相燦, 1986, 앞의 논문 ; 鄭英喜·金炯睦, 1994, 「韓末 漢城府民會의 活動과 地方自治論」, 『인문학연구』 1 ; 金泰雄, 1997, 앞의 논문 ; 이용창, 2004, 「『漢城府民會』의 조직과정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2.

5) 尹炳喜, 1989, 「漢城府民會에 관한 一考察」, 『東亞研究』 17.

6) 月脚達彦, 1997, 「保護條約以後の『實力養成運動』の論理と活動 -兪吉濬と漢城府民會を中心に-」, 『朝鮮學報』 165, 朝鮮學會 ; 金炯睦, 1997, 「自強運動期 漢城府民會의 義務教育 施行과 性格」, 『中央史論』 9 ; 鄭英喜, 2000, 「漢城府民會의 組織과 活動에 관한 研究」, 『역사와 실학』 15·16.

7) 李相燦, 1986, 위의 논문 ; 金泰雄, 1991, 「1894~1910년 地方稅制의 시행과 日帝의 租稅收奪」, 『韓國史論』 26 ; 尹海東, 1997, 「『統監府設置期』 地方制度의 改定과 地方支配政策」, 『韓國文化』 20.

8) 이정은, 1992, 「日帝의 地方統治體制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 洪淳權, 1995, 「일제시기의 지방통치와 조선인 관리에 관한 일고찰 -일제시기의 군 행정과 조선인 군수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64.

9) 金泰雄, 1997, 위의 논문.

2. 지방합병 계획과 좌절

일본은 1904년 2월에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을 기습하면서 러일전쟁을 도발했다. 그리고 한국에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면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일본정부의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도록 했다.¹⁰⁾ 같은 해 8월에는 한국과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한국정부가 외교, 재정 고문을 고빙해 외교, 재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들의 의견을 물어 시행하도록 했다.¹¹⁾ 이에 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가 고빙되어 한국재정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메가타 다네타로는 한국 재정고문으로 고빙되기 전 일본 대장성 주세국장(주세국장)에 재직 중이던 인물이다.¹²⁾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귀국해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전비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에 당시 추밀원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한국 재정고문으로 발탁되었다. 메가타 다네타로는 「재정고문고빙계약서」에 의해 한국재정에 관한 일체 사무에 대해 권한을 가졌고, 이에 한국정부는 그의 허락 없이 재정상의 일을 결정할 수 없었다.

메가타 다네타로는 먼저 화폐정리사업에 착수했고 그 다음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재원 확보를 위해 종래 군수가 징수해 납부하던 세금을 각지에 지금고(支金庫)를 설치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고자 했다. 이 경우 군수가 기존에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과정에서 취한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므로 군수의 봉급을 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군수의 수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봉급을 올릴 경우에 갑자기 거액의 경비가 들게 되므로 먼저 지방합병을 단행해 군(郡)의 수를 줄이고자 했다.¹³⁾ 당시 전국은 갑오개혁 때 8도를 23부로 바뀐 것이 1896년 지방제도개혁으로 13도로 개편되어 유지되었고, 군은 갑오개혁기 337군에서 이후 신설과 폐합을 거쳐 344군¹⁴⁾인 상태였다.

하지만 지방합병 계획은 어떻게 지방을 합병할 것인지 확정되지 못하고 논의만 거듭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04년 12월경부터는 민간에도 지방합병 계획이 공개되었다. 신문 지면에는 기존의 13도 344군을 5도(동, 서, 남, 북, 중앙), 150군으로 줄인다는 설¹⁵⁾, 일진회가 8도 150군을 건의해 이것과 비슷하게 실행될 것이라는 설¹⁶⁾ 등이 게재되었다. 1905년 8월에

10) 최덕수 외, 2010, 『조약으로 본 한국군대사』, 열린책들, 572쪽.

11) 권태억, 1994,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 구상과 ‘시정개선’」, 『한국사론』 31, 233쪽.

12) 이하 메가타 다네타로의 이력과 한국 재정고문으로 발탁된 경위, 재정고문으로서의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했다. 김혜정, 2005,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顧問政治 실시와 목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13) 『統監府文書』 1, 1906년 3월 21일, 「(2)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2회 회의록」. 시정개선협의회 제2회 회의에서 目賀田 顧問은 통감부가 설치되기 전에 자신이 한국 재정고문으로 추진한 지방합병 사업에 대해 진술했다.

14) 작자 미상, 『地方制度調査』(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朝31), 66~77쪽. 이 자료는 1906년에 대한제국 내부가 작성한 문건으로 알려져 있다. 344군은 전국 13도에 배속된 343군과 한성부를 더한 숫자이다.

15) 『大韓每日申報』 1904년 12월 7일, 雜報 「지방제도 이정설」.

16) 『帝國新聞』 1905년 4월 8일, 雜報 「合郡在邇」.

는 꽤 구체적인 지방합병안이 공개되었다.¹⁷⁾ 이때 공개된 내용은 전국을 8도 162군으로 만드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1905년 지방합병 계획 -8도 162군안

기존 지방행정구역		지방합병 계획		
道	郡數	道	郡數	郡
경기도	38 ¹⁸⁾	경기도	19	漢城府, 仁川府, 水原, 楊州, 廣州, 江華喬洞, 開城豐德, 坡州高陽交河, 驪州陰竹, 陽智龍仁利川, 安城竹山, 振威, 陽城, 浦金通津陽川, 始興安山果川, 楊根砥平, 長端麻田, 抱川永平加平, 朔寧漣川, 南陽
충청북도	17	충청도	24	公州, 忠州, 清州, 洪州結城, 泰安瑞山, 沔川唐津, 海美德山, 藍浦오川保寧庇仁, 韓山, 舒川, 鴻山林川, 定山青陽, 禮山大興, 牙山溫陽新昌, 天安稷山平澤, 文義懷仁, 沃川懷德, 黃간永同, 報恩青山, 鎭川청안, 全義木川燕岐, 槐山延豐陰城, 丹陽정風永春, 恩津扶餘石城, 連山魯城鎭岑
충청남도	38			
전라북도	26	전라도	15	務安府, 沃溝府, 淳昌任實, 全州, 羅州, 光州, 濟州大靜旌義, 綾州南平, 錦山珍山, 鎭安長水, 茂朱龍潭, 同福和順, 靈光茂長, 長城高敞, 潭陽昌平, 谷城玉果求禮, 南原雲峯, 礪山高山, 咸悅龍安益山, 順天光陽麗水, 興陽樂安, 長城寶城, 康津海南, 金堤萬頃, 泰仁金溝, 興德井邑, 扶安古阜珍島, 靈岩, 莞島, 智島
전라남도	33			
경상북도	41	경상도	35	東萊府梁山機張, 昌原府, 大邱, 慶州, 晉州, 尙州, 星州, 蔚山彥陽, 延日長기, 영德寧海, 興海清河, 巨濟, 金海熊川, 咸安漆原鎭海, 固城泗川鎭南, 河東昆陽, 南海, 山清咸陽丹城, 密陽清道, 永川新寧, 慈仁慶山河陽, 仁同漆谷, 軍威比安, 義城義興, 昌寧靈山玄風, 宜寧三嘉, 陝川草溪高寧, 居昌安義, 善山開寧, 金山知禮, 安東, 青松眞寶英陽, 榮川禮安奉化, 醴泉豐基順興, 聞慶龍宮咸昌
경상남도	31			
황해도	23	황해도	13	海州, 黃州, 延安白川, 襄津康翎, 長湍豐川, 殷栗松禾長連, 安岳, 信川文化, 載寧鳳山, 瑞興, 谷山新溪遂安, 平山金川
강원도	27	강원도	13	春川, 原州堤川, 江陵襄陽, 洪川橫城, 淮陽, 金化金城華川, 鐵原平康, 伊川安峽冠山, 高城杆城, 영越平昌旌善, 蔚珍三陟平海, 陝谷通川, 楊口麟蹄
평안북도	21	평안도	25	三和府, 平壤府, 寧邊, 安州, 肅川, 定州, 厚昌, 慈城, 江界, 楚山渭原, 昌城朔州, 碧동, 龍川鍊山, 宣川郭山, 嘉山博川, 中和祥原, 龜城泰川, 順安永柔, 江西甑山咸從, 德川영遠孟山, 熙川雲山, 順川价川慈山, 成川陽德殷山, 三登江東
평안남도	23			
함경북도	11	함경도	13	吉州府, 德源府文川安邊, 慶興府慶源, 北青洪原, 咸興, 鏡城富영, 穩城鍾城, 茂山會영, 明川, 端川利原, 永興定平高原, 甲山三水, 長津
함경남도	14			

<표 1>의 지방합병 계획 부분이 당시 언론에 공개된 지방합병안이다. 하지만 실제 지방합병안의 문제인지, 언론에 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내용상 오류가 많아 그대로

17) 『大韓每日申報』 1905년 8월 27일, 雜報 「地方制度」; 『大韓每日申報』 1905년 8월 29일, 雜報 「地方制度(續)」.

18) 한성부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신뢰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합병안을 통해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도의 경우 남도와 북도를 합쳐 갑오개혁 이전의 8도로 복구시키려 했다. 그리고 군의 경우 도를 넘어서 합병하는 경우는 없고, 도내 범위에서만 합병하려고 했다. 규모가 큰 군은 그대로 유지하되 규모가 작은 군 여럿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군 수를 감소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합병 계획에 대해 세간에서는 동요가 있었다. 먼저 지방에서는 지방행정구역 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실직 우려 때문에 불안감이 표출되었다. 지방관들이 지방합병설로 인해 방황하면서 공납(公納)의 지체되는 일이 심해지고, 이서층의 소란도 심해졌다.¹⁹⁾ 아직 부임하지 않은 지방관들은 부임이나 해보고 일자리를 잃자면서 부임지로의 출발을 서두르기도 했다.²⁰⁾ 이에 언론에서는 중앙정부의 기초를 확고하게 한 후 지방합병을 실행하는 것이 실효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합병의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하거나²¹⁾ 당국자들이 지방합병보다는 민심이 어지러운 것을 생각할 것을 요구했다.²²⁾

결국 메가타 다네타로의 지방합병 계획은 1905년 말 실행이 당분간 보류되었다.²³⁾ 갑자기 지방을 합병함으로써 지방에 소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1905년 11월 한국이 일본과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상황에서 지방합병까지 추진되었을 때 발생할 한국민의 부정적 반응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1906년 2월 한국통감부의 설치와 통감의 부임이 예정되면서 메가타 다네타로가 추진하던 일들이 통감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될 예정인 것도 이유로 보인다.

지방합병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고 1906년 3월부터 시정개선협의회를 열면서 다시 의제에 오르게 되었다. 시정개선협의회는 통감이 주재하는 대신회의로, 통감과 한국정부의 대신, 일본인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자리였다.²⁴⁾ 이토 히로부미는 시정개선협의회에서 시정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내정을 개편하고 장악하는 작업을 논의, 결정했다.

시정개선협의회에서 메가타 다네타로는 자신이 재정고문으로서 추진하려 했던 지방합병에 대해 설명하며 합군(合郡)의 실시를 주장했다.²⁵⁾ 메가타 다네타로는 한국의 지방경비가 지나치게 적고 도와 군은 너무 많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내부대신 이지용은 실직하는 군수의 선동에서 기인하는 소란을 막기 위해 경찰력을 증가하지 않으면 합군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 통감 이토 히로부미도 동의했다. 그 결과 시정개선협회의의 중론은 지방합병은 곧 있을 경찰 정리와 경찰력 증가를 기다려서 시행하고, 그 전에 지방합병 시행을 위한 지방조사위원을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06년 4월 한국 내부에 지방제도조사소가 설치되고 지방제도조사위원이 지방합병을 위한 조사 사무에 착수했다.²⁶⁾ 작업은 전국 각 군에 지도를 상송하도록 해 지형, 원근 등에 따라 구역을 획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⁷⁾ 그리고 지방합병은 그 해 음력 7월(양력 8~9월)에

19) 『皇城新聞』 1905년 9월 1일, 論說 「宜先修內政」.

20) 『帝國新聞』, 1906년 3월 6일, 雜報 「合郡之故」.

21) 『皇城新聞』 1905년 9월 1일, 論說 「宜先修內政」.

22) 『帝國新聞』, 1906년 1월 10일, 論說 「직직의근본을알지못호는일」.

23) 『統監府文書』 1, 1906년 3월 21일, 「(2)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2회 회의록」.

24) 남은정, 2020, 「통감부 시기(1906~1910) ‘시정개선협의회(施政改善協議會)’의 구성과 기능 : 제3차 한일협약 전후(前後)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12쪽, 79~84쪽.

25) 『統監府文書』 1, 1906년 3월 21일, 「(2)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2회 회의록」.

26) 『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25일. 雜報 「調査着手」; 『皇城新聞』 1906년 4월 25일, 雜報 「地方調査會」.

단행되고 군수는 모두 해임한 후 그 중 치적이 우수한 자, 또는 흠결이 없는 자를 다시 서임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방합병을 둘러싸고 한국 내부와 통감부 사이에 의견 차가 발생했다. 먼저 내부는 지방합병을 최소화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13도는 그대로 두고 기존 344군에서 50군만 줄일 것을 주장했다.²⁸⁾ 이와 같은 의견은 반복되어 110군을 줄이는 것으로 수정되었고²⁹⁾ 다시 130군을 줄이는 것으로 수정되었다.³⁰⁾ 이렇게 계속 수정되는 이유는 통감부의 반대 때문이었다. 통감부는 내부의 지방합병안을 수정해 182군을 줄이자는 입장이었다.³¹⁾ 이는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한국 내부의 입장대로 지방합병은 13도는 그대로 두고 344군을 219군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³²⁾

당시 언론은 지방합병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제국신문』은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부임 후 줄곧 지방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을 논설을 통해 나타냈다.³³⁾ 지방합병을 단행하는 것이 민생을 위하는 길이자 국가경제상의 급선무라는 것이다. 군의 크기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 한국민들이 납세 부담 등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 지방합병의 타당성을 주장했고 한국정부가 과거를 지키며 지방합병을 단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방합병으로 재정을 확보해 교육이나 산업을 보조하는데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합병을 통해 문명부강의 기초를 세우기를 기대했다.

반면 『만세보』, 『황성신문』은 지방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만세보』는 지방제도조사 방식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³⁴⁾ 지방제도사위원들이 한성에서 각 지방 군수를 통해 전달 받은 문서만으로 구역을 논정(論定)하는데 흠결이 없겠냐는 것이다. 이에 지방의 인구, 편호(編戶), 전답 실수(實數) 등을 자세하게 조사한 후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평균할 것을 평균하고 합병할 것을 합병하고 분할할 것을 분할한 후 지방합병을 실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황성신문』은 지방합병 자체를 반대했다.³⁵⁾ 지방합병의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지방합병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 다른 폐단을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고 지방합병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한국민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 민심이 동요하며 이서층이 반발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 지방합병으로 읍(邑)이 커지면 이서나 면장, 집강이 관을 기만하고, 도리어 뇌물과 관직매매가 더 성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지방합병에 대한 지방 현장의 여론도 분분했다. 유생이나 이서층들은 자기 군을 합군 대

27)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5일, 雜報 「地方制度」; 『皇城新聞』 1906년 5월 5일, 雜報 「百四十郡」; 『帝國新聞』 1906년 5월 5일, 雜報 「合郡概定」.

28) 『萬歲報』 1906년 6월 28일, 雜報 「地方制度議案提出」; 『皇城新聞』 1906년 7월 17일, 雜報 「合郡數爰」.

29)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13일, 雜報 「合郡確聞」.

30)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17일, 雜報 「何件實施」.

31) 『皇城新聞』 1906년 7월 17일, 雜報 「合郡數爰」;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17일, 雜報 「何件實施」.

32) 작자 미상, 『地方制度調査』, 269~270쪽.

33) 『帝國新聞』 1906년 3월 7일, 論說 「지방제도실시에관혼스」; 1906년 3월 8일, 論說 「지방제도실시에관혼스(속)」; 1906년 6월 2일, 論說 「소위의병과 정부의닉직」; 1906년 6월 8일, 論說 「지방제도 정리에대하야 인민의 스정과 당국자의 주의홀일」.

34) 『萬歲報』 1906년 7월 1일, 論說 「지방제도」.

35) 『皇城新聞』 1906년 7월 23일, 論說 「合郡이 不當其時{欲速不達}」; 『皇城新聞』 1906년 7월 24일, 論說 「合郡이 不當其時{徐徐圖之} [續]」.

상에 넣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합군할 것이면 자기 군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군할 것을 요구했다.³⁶⁾ 어떤 군에서는 백성들이 경비를 걷어 삼삼오오 상경해 자기 군이 다른 군과 합군되지 않게 하면 금전을 대가로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⁷⁾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지방합병 추진으로 인한 당시 인민의 동요를 주시하고 있었다.³⁸⁾ 이미 을사조약에 반발해 의병들이 기병한 상태에서 항간에는 지방합병에 반대하는 이서충 등의 지방민들이 의병에 가세한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었다.³⁹⁾ 통감부가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의병을 진압하는 상황에서 의병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통감의 입장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1906년 7월, 이토 히로부미는 시정개선협의회에서 한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지방합병을 실행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⁴⁰⁾ 지방합병에 관한 논의가 유생들의 격앙을 사서 인심을 불온하게 할 뿐이며 합병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정부에 여론을 무마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합병으로 통감 통치에 균열이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한 조치였다.

지방합병이 좌절된 상황에서 통감부는 다른 활로를 모색했다. 먼저 한국 내부로 하여금 기존의 군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의 군분합을 주장하도록 했다. 전국 군의 대소를 균일하게 분할해 지계(地界)를 획정한다는 것이다.⁴¹⁾ 내부는 이것을 지방제도조사소에서 조사할 것을 정부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결국 의결되었다.⁴²⁾ 지방제도조사소에서 조사 사무를 끝내자 내부는 비래면(飛來面)(본래 지형상 A군에 해당하나 B군 소속인 면)을 옮기고 군치(郡治)의 경계를 새로 확정할 것을 정부에 청의서로 제출했다.⁴³⁾

하지만 정부 회의에서는 군분합에 대해 누차 반론이 제기되어 쉽사리 결론이 나지 못했다.⁴⁴⁾ 새로운 군분합 계획에 대해서는 『황성신문』 측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⁴⁵⁾ 몇 달 전에 논의되었던 지방합병 계획을 ‘대경장대분합(大更張大分合)’이라고 하고 이번 군분합 계획을 ‘소경장소분합(小更張小分合)’이라고 하면서 지방합병이 실시의 때가 아니었던 것처럼 군분합도 역시 때가 아니므로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지(民智)가 미개하여 인민들이 군분합을 불안하게 여기고, 군분합으로 인해 각군 이민(吏民)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 한국정부가 아직 공고하지 않고, 지방관리가 탐오(貪汚)한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군분합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군분합은 정부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906년 9월부터 시행이 진행되었다.⁴⁶⁾ 이에 몇 면이 다른 군으로 이속되고, 몇 군이 다른 도로 이속되었다. 그에 따라 양안, 호적, 그 외 인민·토지에 관한 제반 장부를 즉각 조사하여 이속한 지역으로 넘겨주도록 했다.⁴⁷⁾

36) 『帝國新聞』 1906년 6월 2일, 論說 「소위의병과 정부의닉직」.

37) 『帝國新聞』 1906년 6월 8일, 論說 「지방제도 정리에디후야 인민의 스정과 당국자의 주의홀일」.

38) 『統監府文書』 1, 1906년 7월 23일, 「(9)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9회 회의록」.

39) 『帝國新聞』 1906년 3월 30일, 雜報 「地方不穩」; 1906년 6월 2일, 論說 「소위의병과 정부의닉직」.

40) 『統監府文書』 1, 1906년 7월 23일, 「(9)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9회 회의록」; 『帝國新聞』 1906년 7월 25일 雜報 「地方制度無效」; 「三大問題」.

41) 『皇城新聞』 1906년 9월 3일, 雜報 「時機合乎」;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4일, 「地方制度」.

42)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4일, 雜報 「地方制度」.

43) 『皇城新聞』 1906년 9월 19일, 雜報 「地制提議」.

44)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21일, 雜報 「地方制度의 上奏」.

45) 『皇城新聞』 1906년 9월 6일, 論說 「再論地方制度改正」.

46) 『皇城新聞』 1906년 9월 27일, 雜報 「制度頒布」. 「官報」附錄 光武10年 9月 28日, 勅令 第49號 「地方區域整理件」.

군분합의 시행은 전국에 걸쳐 반감과 혼란을 초래했다. 예컨대 진주군의 여섯 면은 고성군으로 이속되었는데 토지장부와 호구를 조사해 고성군에 넘겨주라는 관찰부의 명령에 이서배가 불응하는 일이 발생했다.⁴⁸⁾ 또 춘천군 기인면(麒麟面)은 인제군으로 이미 이속했는데, 춘천군수 이명래(李明來)가 인제군에 결세(結稅)를 독봉(督捧)하기도 했다.⁴⁹⁾ 성주군 아홉 면은 고령군으로 이속하였는데 성주군수 김흥기(金興基)가 아홉 면을 다시 환속하기 위해 유생들을 한성으로 보내 환속 운동을 시키고, 그 여비는 성주군 9천여호에 호당 엽전 2전 5푼씩을 걷도록 했다.⁵⁰⁾ 천안군은 두 면을 아산군으로 이속했는데, 인민의 방해로 신창군으로 이속되는 일도 있었다.⁵¹⁾

전국적인 혼란을 야기한 군분합은 언뜻 지방합병 계획이 축소, 변용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에 지방합병 계획을 통해 지방경비를 마련하려 했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통감부로서는 재정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3. 한성과세 시도와 한성자치론의 대두

통감부는 재정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한성과세에서 찾았다. 지방합병을 포기한 후 처음 개최된 시정개선협의회에서 한성과세가 바로 논의되기 시작했다.⁵²⁾

한성과세가 고려되는 이유는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 지방세를 과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성부는 일체의 과세를 면제받고 있었다. 기존에 관찰사, 군수에 의한 수세법이 관용되고 있는 지방에 비해 새로운 세법(稅法)을 마련하기 용이한 조건이었다. 통감부는 한성부에서 새로운 세법과 지방제도를 정해 과세한 뒤 이것을 경기도로 확대하고, 다시 이것을 다른 지방으로 확대할 계산이었다.

한성과세는 국세에 부가해 몇 할(割)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업무에 관한 과세는 후일로 미루고 우선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는 한성부 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부담하는 것으로 구상했다. 아직 한성과세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통감부는 한국 내부를 통해 1906년 9월에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⁵³⁾

한성과세 계획에 대해 학부대신 이완용은 한성부에 갑자기 과세를 실시하면 인민의 원성을 듣게 되므로 과세의 실시를 후일로 미루자는 입장이었다.⁵⁴⁾ 그러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준비가 된다면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여기에 내부대신 이지용, 법부대신 이하영,

47) 『皇城新聞』 1906년 9월 28일, 雜報 「調査移簿」.

48) 『皇城新聞』 1906년 10월 25일, 雜報 「慶南來信」.

49) 『皇城新聞』 1906년 11월 14일, 雜報 「移結何督」.

50) 『皇城新聞』 1906년 11월 15일, 雜報 「官民一般」.

51) 『皇城新聞』 1906년 10월 20일, 雜報 「民沮移面」.

52) 『統監府文書』 1, 1906년 8월 15일, 「(10)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10회 회의록」.

53) 『官報』 附錄 光武10年 9月 28日, 勅令 第50號 「地方官官制」 “第8條 觀察使는 內部大臣과 度支部大臣의 所定을 依히야 地方稅를 賦課徵收함을 得함이라”.

54) 『統監府文書』 1, 1906년 8월 15일, 「(10)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10회 회의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이 찬동했다.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한성과세를 당장 시행하고 지방세는 1907년 1월부터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⁵⁵⁾ 결국 1906년 12월에 반포된 「지방세규칙」에 의해 1907년 1월부터 한성부 및 각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다.⁵⁶⁾

그러나 한성과세는 쉽사리 시행되지 못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조약에 의해 거류지 10리 밖 거주와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의 거류지 10리 밖 거주와 부동산 소유가 행해지고 묵인되었다. 이제 한성 과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식 승인해야만 했다.

외국인의 거류지 10리 밖 거주와 부동산 소유의 승인은 한국과 외국의 조약 개정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 치외법권의 폐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했다.⁵⁷⁾ 하지만 사실상 조약 개정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군부대신 권중현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한국 주재 외국인의 상당수가 일본인이므로 일본인의 지방세 납부를 승낙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것을 고찰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법률상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강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조약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907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지방세규칙은 4월로 연기되었고, 막상 4월에 와서는 지방기관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분간 징수를 중지했다.

한성과세 시도를 계기로 관계와 민간에서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논의를 시작한 것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였다. 그는 지방세를 징수하면 인민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별을 모르기 때문에 국세를 늘린 것으로 속단할 것이므로 반드시 지방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⁵⁸⁾ 이에 따라 한국 내부에서는 1906년 10월부터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의논하기 시작했고⁵⁹⁾ 1907년 4월 지방자치제에 관한 초안을 완성하였다.⁶⁰⁾ 5월에는 내부대신 임선준이 지방 각군에 면장을 선임해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을 한국정부에 청의했다.⁶¹⁾

언론에서는 한국정부의 지방자치제 논의 진행과⁶²⁾ 당시 청 각성(省)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 논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⁶³⁾ 대한자강회에서는 연설회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⁶⁴⁾ 서북학회에서는 『西友』에 지방자치의 관념을 설명하는 글을 게재하였다.⁶⁵⁾ 지방에서도 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어,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군수 김영진(金榮鎭)이 직접 장정규칙을 만들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했고, ⁶⁶⁾ 충청도 홍

55) 『統監府文書』 1, 1906년 11월 6일, 「(12)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12회 회의록」.

56) 『官報』 第3651號 光武11年 1月 1日, 勅令 第81號 「地方稅規則」.

57) 『統監府文書』 1, 1907년 4월 9일, 「(14)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14회 회의록」.

58) 『統監府文書』 1, 1907년 4월 9일, 「(14)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14회 회의록」.

59) 『皇城新聞』 1906년 10월 30일, 雜報 「自治擬議」; 『大韓每日申報』 1906.10.31. 「自治實施」.

60) 『統監府文書』 1, 1907년 4월 9일, 「(14) 한국의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14회 회의록」.

61)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31일, 漫評 「心鑑已開」.

62) 『皇城新聞』 1906년 12월 18일, 雜報 「提議自治」.

63) 『皇城新聞』 1906년 12월 22일, 外報 「地方官制改革과 督撫」; 『皇城新聞』 1906년 12월 24일, 外報 「袁總督의 自治策」; 『皇城新聞』 1907년 1월 9일, 外報 「自治會稟設」; 『萬歲報』 1907년 1월 9일, 外報 「淸國의 地方自治制」; 『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24일, 外報 「譯書近呈」; 1907년 4월 6일, 外報 「憲法新書」. 청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소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도되었다.

64) 『皇城新聞』 1907년 2월 21일, 雜報 「大韓自強會演說(續)」.

65) 『西友』 제9호, 1907년 8월 1일, 「法律上 自治의 觀念」.

주군에서는 군수 김상연(金祥演)이 자신이 배운 정치학을 응용해 지방정치를 쇄신하고자 지방자치행정을 펼칠 계획을 공개했다.⁶⁷⁾ 경상북도관찰사 이충구(李忠求)는 군수회(郡守會)를 개최해 진보의 사상과 쇄신의 방침을 연설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논했다.⁶⁸⁾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논의가 한성과세 구상에서 발화되었던 만큼 먼저 한성에서 자치제를 실시해 지방으로 확대하자는 한성자치론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한국 중추원과 민간 두 경로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중추원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통감부 권력에 장악되어 있는 의정부 대신들을 고종의 지원 아래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⁶⁹⁾ 국권수호와 인민의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의정부에 법률 제정을 요구하였다. 대한자강회, 서우학회, 기호학회 평의원이었던 여병현(呂炳鉉)은 1907년 1월 중추원 부찬의로서 한성자치제 실시를 건의했다.⁷⁰⁾ 인민의 자치정신이 있는 연후에 국가의 독립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고, 지방자치제를 갑자기 전국에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한성에 먼저 시험 삼아 시행하자는 것이다.⁷¹⁾ 안건은 중추원 회의에서 가결되어 한국정부에 제출되었다.⁷²⁾

중추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성자치제는 기존에 부(府)에 해당했던 한성을 시(市)로 바꾸고 한성에 자치시제(自治市制)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⁷³⁾ 그리고 기존에 한성부 이하 서(署)-방(坊)-동(洞) 체계였던 것을 시 이하 구(區)-방-동-통(統) 체계로 고치도록 했다. 기존에서는 중서(中署), 동서(東署), 서서(西署), 남서(南署), 북서(北署)로 나뉘지고 그 아래 방과 동의 수, 그리고 소속된 호구수가 일정하지 않았다.⁷⁴⁾ 이제 구는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하면서 부호(富戶)가 많이 모인 구역과 빈호(貧戶)가 많이 모인 구역을 구별해 2대 3의 비율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1000호를 1방, 100호를 1동, 10호를 1통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시, 구, 방, 동, 통의 수장인 시장(市長), 구장(區長), 방장(坊長), 동장(洞長), 통수(統首)는 자치제의 임원으로 선거로 뽑도록 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시장을 통치하고, 시장이 구장을, 구장이 방장을, 방장이 동장을, 동장이 통수를 지휘하는 구조였다. 시, 구, 방, 동에는 각각 의사회(議事會)가 설치되어 매월 1회 소집하도록 했다.

시 행정은 구 단위로 이루어져 각 구에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 구장 외에 상임원(常任員), 사역(使役)을 두어 매일 근무하도록 했다. 시장은 구장을 매월 1회 의사회에 소집해 각 구의 치안, 경찰, 위생, 교육, 상업상황, 재이(災異) 등에 관한 일을 보고 받은 후 선후 방침을 상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

각구에서는 교육비, 위생비, 상임원 봉급과 사무소 잡비에 지출하기 위해 각호에 과세하도록 했다. 곧 지방세인 것이다. 지방세는 호를 단위로 하되 호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66) 『皇城新聞』 1907년 4월 15일, 雜報 「洪倅自治」.

67)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6일, 雜報 「洪兪圖治」.

68) 『皇城新聞』 1907년 5월 28일, 雜報 「達察治蹟」.

69) 이방원, 2010, 「제5장 중추원의 개편과 기능 강화(1904-1907)」, 『한말 정치변동과 중추원』, 혜안.

70) 위의 책, 254-255쪽, 273쪽 ; 『中樞院來文』 9, 光武11年 1月, 照會 제7호, 26쪽.

71) 『中樞院來文』 9, 光武11年 1月, 照會 第7號, 26쪽.

72) 『中樞院來文』 9, 光武11年 1月, 照會 第7號, 25쪽 ; 『皇城新聞』 1907년 1월 30일, 雜報 「樞院議決自治制」 ; 『大韓自強會月報』 8號, 1907년 2월 25일, 雜錄 「樞院議決自治制」.

73) 이하 중추원의 한성자치제 구상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했다. 『中樞院來文』 9, 光武11年 1月, 照會 제7호, 27~30쪽.

74) (작자미상), 『地方制度調査』, 89~93쪽.

나뉘어서 과세하도록 했는데, 이는 재산 다과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차등 과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추원이 제출한 한성자치제안은 한성을 시로 바꾸고 임원의 피선, 처무, 지방의회, 지방세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888년 제정된 일본의 시제(市制)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도와는 차이점은 일본은 시가 자치행정의 기본이고, 단지 처무 편의를 위해 구를 둘 수 있게 한 것에 반해 중추원안은 시 아래의 구를 자치행정의 기본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⁷⁵⁾ 또 일본의 경우 구 아래 단위에 대한 편성과 규정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반면, 한성자치제의 경우 구 아래 방, 동, 통을 편성하고 각 단위에 대한 규정을 구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성에 일본 시제를 차용한 자치시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이것을 한성에 국한하지 않고 한성을 시범으로 다른 도시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 시제와 다르게 시가 아닌 구를 자치행정의 기본으로 삼은 것은 기존의 관치행정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시장을 민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보다 상당한 자치성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시행정까지도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자치시제를 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이에 당시 현실 권력을 의식해 기존의 관치행정은 유지시키고 그 아래 단위의 구를 자치행정의 기본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 아래 방, 동, 통을 편성했던 것은 기존 한국 고유제도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시제를 운용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추원의 한성자치제 구상은 그 건의자가 실력양성운동단체 인물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통감 통치 하 제도권에서의 발의였다는 점에서 관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또 통감부의 한성과세를 계기로 구상이 촉발되었다는 점, 통감부가 도입시키고자 한 지방세 과세를 구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감부 체제에 조용하는 성격을 띤다.

하지만 당시가 통감부가 한국의 관치행정을 점차 장악해가던 시기인 것에 비춰보면 시장의 민선과 구의 자치행정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자치제는 한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길이었다. 여기에 부호가 많은 구와 빈호가 많은 구의 비율을 2:3으로 하고 방, 동, 통의 호수 편제를 일정하게 하도록 했다는 구상했다는 점, 그리고 등급별 지방세 차등 과세를 구상했다는 점은 자치제를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시 한국 도시지역에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거주했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편익을 중심으로 시제가 운영되지 않도록 견제하고자 의도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국정부에서는 중추원의 한성자치제 실시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⁷⁶⁾ 한국정부 역시 통감부와 함께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던 시기에 실력양성운동단체와 관계있는 중추원의 안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추원에서는 제출 한 달 후 빨리 건의안을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⁷⁷⁾ 그러나 제출로부터

75) 일본 「市制」, “제60조 凡 시는 처무 편의를 위해 시참사회의 의견으로써 그것을 여러 구(區)로 나뉘어 구마다 구장(區長) 및 그 대리자 각 1명을 둘 수 있다”(日本 『官報』 第1143號, 明治21年 4月 25日, 246쪽).

76)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7일, 雜報 「四件更議」; 『大韓自強會月報』 9號, 1907년 3월 25일, 雜錄 「樞院議決」.

두 달이 지나도 정부는 한성자치제에 관한 답을 주지 않았다. 당시 정부에서는 한성자치제 외에도 중추원에서 제출한 10건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있었다.⁷⁸⁾ 이에 중추원에서는 정부에 안건이 시의(時宜)에 부합하지 않아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할 수 있으나 처결을 끝내지 않은 것인지를 묻고, 후자의 경우라면 중추원 관제에 따라 정부 관리를 중추원에 보내 취지를 변론하여 타결을 도모할 것을 청했다. 정부에서는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

중추원이 한성자치제 안에 대해 한참 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1907년 2월, 민간에서도 한성자치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진 사용(司勇) 조운용(趙允鏞), 진 주사 윤영택(尹榮宅), 현동림(玄東琳), 진학주(秦學胄)가 정부에 한성시제를 반포해 차차 부·군에 과급하게 하자고 청원한 것이다.⁷⁹⁾ 이들은 치국(治國)의 요(要는) 민족이 강한데 달려 있고, 민족이 강한 근본은 교육과 위생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루는 방법이 자치제라고 역설했다. 일본이 흥한 것은 시제 개량을 구미의 법, 특히 독일의 제도를 본받아 자치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구규(舊規)와 외국의 신법(新法)을 참고해 우리 민으로 하여금 자치의 제도에 모이고, 문명의 구역에 나아가게 하자고 했다. 이에 한성시제 반포를 청원한다는 것이다.

한성시제를 청원한 이들은 윤영택이 1895년 춘천부 주사⁸⁰⁾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관직 경력이 없는 한성 유지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영택은 1906년 국문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을 정부에 청원하고 국문속성학교(國文速成學校) 설립을 추진했다.⁸¹⁾ 조운용은 1903년 경원철도 부설 시 대한철도회사(大韓鐵道會社) 사원,⁸²⁾ 경의철도 부설에 관한 대한철도회사 발기인⁸³⁾ 경력이 확인되며 현동림은 1906년 보학원(普學院) 발기인이었다.⁸⁴⁾ 진학주는 1905년 서북철도국 사원⁸⁵⁾이었고 1908년 여자교육회 회장을 지내는 인물이다.⁸⁶⁾

이들은 1907년 3월 한성시제준비회를 조직했다.⁸⁷⁾ 준비회의 목적은 한성시제를 공법(公法)으로 반포한 후 실행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사를 초청해 매주 토요일마다 연설하기로 했다. 5월에는 한성부 상동(相洞) 대동문우회(大東文友會) 사무소에서 통상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改選)했는데 회장에 홍종억(洪鍾億), 부회장에 조운용, 평의장에 이순하(李舜夏)가 선출되었다. 여기에서 홍종억과 이순하는 모두 관료 출신이다. 홍종억은 1896년 한성재판소 판사,⁸⁸⁾ 1899년 중추원 부의장,⁸⁹⁾ 의관,⁹⁰⁾ 1902년 평리원 검사⁹¹⁾ 경력이 있는

77) 『中樞院來文』 9, 光武11年 2月 25日, 照會 第13號 ;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7일, 「四件更議」.

78) 『中樞院來文』 9, 光武11年 4月 29日, 照會 第30號 ; 『皇城新聞』 1907년 5월 1일, 「樞院會議案件」.

79) 『請願書』 3, 光武11年 2月, 「上書」.

80) 『內部來文』 1, 開國504年 7月 17日, 照會 第99號.

81) 『皇城新聞』 1906년 2월 19일. 雜報 「國文學校」.

8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1903년 1월 11일, 「(17) 京義·京元 兩 鐵道の 借款에 관한 件」, 萩原 →小村 大臣.

8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1903년 9월 10일, 「(96) 京義鐵道에 관한 書類寫本 進達의 件」, 林 公使 →小村 外相.

84) 『皇城新聞』 1906년 12월 28일, 雜報 「普學院趣旨書」.

85) 『京畿道各郡訴狀』 16, 光武9年 1月, 「請願書」.

86) 『統監府文書』 4, 1908년 7월 29일, 「(25) 國債報償會의 募會에 대한 베델의 立場에 관한 件」, 曾 爾 副統監 →伊藤 統監.

87)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1일, 雜報 「市制新會」 ; 『皇城新聞』 1907년 3월 23일, 雜報 「市制研究」.

인물이고, 이순하는 1897년 홍양군수,⁹²⁾ 1900년 길주·성진민요 안핵사⁹³⁾, 1905년 법무 문부 심리위원(文簿審理委員)⁹⁴⁾을 지낸 인물이다.

한성시제준비회는 1907년 5월 내부 경무청에 시제준비에 관한 활동 인허를 청원했다.⁹⁵⁾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답도 내려지지 않았다. 내부대신 임선준이 정부에 청의한 지방자치제안도 여전히 보류상태였다. 결국 임선준의 지방자치제 청의, 중추원의 한성자치제 청의, 한성시제준비회의 시제 준비 인허 청원 모두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 이르렀다.

통감부는 처음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후 논의를 전환했다. 한국정부로 하여금 1907년 5월 「지방위원회규칙」을 발표하게 하고 전국에 지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⁹⁶⁾ 지방위원회를 각 지방의 세무관 주재지에 두도록 하고, 재무에 관해 정부의 자문에 응하거나 정부에 의견을 상신하도록 했다. 통감부는 지방위원회의 설치에 지방자치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방위원회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볼 수는 없었다.⁹⁷⁾ 통감부는 이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국민들의 눈에도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제가 아니었으므로 언론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는 논설이 계속해서 게재되었다.⁹⁸⁾ 특히 『황성신문』은 당시 1907년 7월 고종의 양위와 군대 해산으로 봉기한 의병을 귀화시키는 방법으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제안했다.⁹⁹⁾ 당시 의병을 진정시키는데 선유사를 파견하거나 자위단을 조직하는 방법이 효력이 없어 내부에서는 귀화하는 의병을 공격하지 말라는 문빙(文憑)을 발송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황성신문』은 지방 인민들이 귀화하는 의병들을 적발해 포살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지방제도를 개정해 구역을 확정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반포해 실행하게 하고 의무 교육의 제도도 이에 따라 연구하여 힘써 시행하게 하면 인민이 자연히 서로 연락하여 폭동의 폐가 제거되고 단체의 힘도 결합하여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실시되지 못하고 담보상태에 있던 지방자치제도를 통감부와 정부에 의병 귀화의 방법으로 제안해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황성신문』은 지방자치제도를 의병 귀화의 방법으로 제안한 논설을 게재한 이후에도 지방자치제에 관한 논설을 연달아 게재하며 그것이 현재 상황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¹⁰⁰⁾ 즉 자치제를 시행하면 상하의 정(情)이 상달(相達)하고 알력·충돌의 폐가 적어지고

88) 『高宗實錄』 高宗 33年 9月 19日.

89) 『高宗實錄』 高宗 36年 2月 16日.

90) 『高宗實錄』 高宗 36年 5月 30日.

91) 『高宗實錄』 高宗 39年 7月 18日.

92) 『獨立新聞』 1897년 6월 12일, 雜報.

93) 『高宗實錄』 高宗 37年 10月 17日.

94) 『皇城新聞』 1905년 5월 1일, 雜報 「審簿委員」.

95)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31일, 雜報 「市制準備會의 請認」; 『皇城新聞』 1907년 6월 1일, 雜報 「市制會請願」; 『萬歲報』 1907년 6월 7일, 雜報 「市制準備會講師」.

96) 『官報』 第3768號 光武11年 5月 17日 勅令 第31號 「地方委員會規則」.

97) 李相燦, 1986, 앞의 논문, 63-65쪽; 김태웅, 2012,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아카넷, 368-370쪽.

98) 『大韓每日申報』 1907년 10월 26일, 漫評 「秋氣上筆」; 『共立新報』 1908년 3월 11일, 論說 「地方自治制論」.

99) 『皇城新聞』 1907년 12월 20일, 論說 「義徒歸化方法의 說」.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가 드물어져 관민 조화의 책이 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입법이 지방에 미쳐 오늘과 같은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자치제를 시행하면 재야 지사(志士)가 시설이 지방에 적당한지 여부를 토론했 후 시행하여 폐단이 사라지고 국가에 위해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옹호적인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는 가운데, 민간에서 한성자치에 관한 논의도 현재진행 중이었다. 1908년 2월 한성의 상업회의소에서는 한성자치제 실시를 추진하자는 논의를 제기했다.¹⁰¹⁾ 그리고 그 해 5월 한성부윤 장헌식(張憲植)의 주도로 한성자치제 실시를 위한 한성부민회의 창립이 추진되었다.¹⁰²⁾ 장헌식은 관료였지만 개인자격으로 참여했고 일본 유학시절에 교류했던 유길준을 한성부민회 발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정했다. 이후 한성부민회는 유길준의 주도로 한성자치제 실시를 위한 대표단체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4. 맺음말

통감부기 지방자치론은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제기한 정치적 자구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의 제도화를 주장하며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 한성부민회의 창립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성부민회 창립은 당시 조야에서 제기된 한성자치론을 배경으로 한다. 한성자치론은 통감부가 추진한 지방합병 계획이 실패하고 한성과세 논의가 제기되면서 대두되었다. 먼저 지방합병 계획은 1904년 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 고빙된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방합병 계획은 전국의 도와 군을 줄이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한국민의 반발과 1906년 통감의 부임을 앞두고 실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한 후 지방합병 계획을 재추진했으나 한국민의 반발로 인해 지방합병은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통감부는 지방합병 계획이 좌절되자 한성과세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한성과세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에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성 내 외국인 과세 문제가 걸려 있었고 이는 조약 개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통감부가 한성과세로 발생할 한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함께 논의함에 따라 민간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성과세는 사실상 포기되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논의는 계속되었다. 관계와 민간에서는 먼저 한성에서 자치제를 실시해 지방으로 확대하자는 계획으로 한성자치론을 주장했다. 특히 중추원에서 작성해 한국정부에 청의한 한성자치제 구상이 주목할 만하다. 중추원의 한성

100) 『皇城新聞』 1907년 12월 22일, 論說「地方自治制」; 『皇城新聞』 1907년 12월 24일, 論說「地方自治制(續)」.

101) 『共立新報』 1908년 2월 12일, 雜報「自治制協議」.

102) 『大韓每日申報』 1908년 5월 10일, 雜報「自治制任員」; 『皇城新聞』 1908년 5월 10일, 雜報「自治有望」.

자치제 구상은 일본 시제를 차용했지만 일본 시제와는 다르게 시장 민선과 시 아래 지방행정구역인 구를 자치행정의 기본단위로 설정했다. 이러한 구상은 관계적이고 통감부 체제에 조응하는 성격을 띠지만 당시 상황에서 한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중추원의 한성자치제 청의 외에도 한성 유지들이 한성자치제 도입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한성시제준비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한국정부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고, 통감부도 지방에 재무에 관한 자문기관인 지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논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여론이 계속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1907년 5월 한성부민회가 창립되었다.

요컨대 한성부민회는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이 좌절된 후 한성과세 시도로 촉발된 한성자치론을 배경으로 창립될 수 있었다. 이는 한성부민회가 당시 지방자치론의 전개 속에서 돌출적으로 창립된 것이 아니라 통감부의 정책에 대응하면서 여타 한국인의 정치의식을 저변으로 창립된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한성부민회 창립 배경으로 지적한 지방합병 계획은 1914년 일본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제도 개편 작업과 현상적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민의 반발이 주요 원인이 되어 좌절되었다는 점이 식민지기와는 다른 이 시기만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 한성자치론은 한국민이 현실 통치권력과 길항하면서 내놓은 참정권 확보 논의이라는 점에서 정치운동으로서의 일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은 일본에 의해 국권이 상실되어가던 시기에 나타난 정치운동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양진아,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과 한성자치론의 대두」에 관한 토론문

김소영(건국대)

본 연구는 1905년 이후 통감부의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세 수취 계획과 시도를 한성자치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하고, 한성자치, 한성과세를 실시하기 위해 한성부민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염두에 두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머리말’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통감부 시기 ‘지방자치론’에 대한 여러 논의와 지방과세,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한성자치제 실시와 한성과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와 함께 자치제와 과세 실행을 위해 한성부민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문의 제목과 목차 구성은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제목의 경우, 통감부가 지방합병이든 군분합이든 지방제도를 개편하려 했던 것이나 이후 지방자치제를 언급했던 것 모두 궁극적으로 지방과세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목이나 목차 구성에서도 통감부의 지방과세 계획과 실행을 밝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제목, 목차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한 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연구 목적에서 ‘한성부민회’의 설립 배경으로서 위의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본문에서는 한성과세 시도와 한성자치에 대한 논의만을 분석한 후 이 때문에 ‘한성부민회’가 설립되었다고만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성부민회’의 설립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설립 이후 활동 내용을 한성과세나 한성자치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통감부는 지방합병에 실패하고 군분합을 실시했는데, 군분합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원래 목적했던 지방재정 확보는 이루지 못했다. 또 지방합병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군분합에 대해서도 한국민들의 반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군분합을 실시한 이유를 좀 더 명확히 밝혔으면 한다. 즉 지방제도 개편이 지방세 확보 목적 외에도 행정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즉 보호통치,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통감부의 한성과세 계획은 전국적인 지방세 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밑작업이었으며, 또 지방세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지방단체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감부의 의도에 따라 한국 정부, 내부에서 지방자치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한성

자치론이 크게 중추원과 민간 두 경로에서 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이후 설명에서는 논의주체에 대한 성격 규정이 불분명하고, 또 한성자치제 실시의 의도와 성격에 대한 설명도 애매하다.

즉 중추원의 한성자치제도 참의 여병현과 같이 계몽운동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제도의 실시를 건의했다는 점에서 민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또 통감부의 지방세 과세를 의도하며 제기한 한성자치론을 다시 중추원에서 제기했으므로 중추원의 한성자치론도 통감부 체제에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설명에서는 그럼에도 한성자치제는 참정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길이었던 점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현재의 서술은 ‘한성자치론’을 처음 제기한 통감부,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은 세운 한국정부, 또 한국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중추원, 그리고 ‘민간’의 한성자치론 실시 주장과 목적이 혼재되어 각각의 논의나 목적이 어떤 점에서 같거나 다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4. 한성유지들이 한성자치, 한성시제를 청원하면서 조직했다는 ‘한성시제준비회’가 결국 정부로부터 인허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성시제준비회’와 마찬가지로 한성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 창립된 한성부민회는 인허를 받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939년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분열과 그 귀결

박영훈(성균관대)

1. 머리말
2. 북미 대한인국민회 내부 논쟁
3. 신진세력의 형성과 협상 결렬
4. 맺음말

1. 머리말

1939년 한 해 동안 북미 대한인국민회(이하 북미 국민회로 줄임) 지도부와 그 내부 소수 세력은 대화와 대결을 반복했다. 협상이 진행되다가도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국면의 전환이 세 차례 있었다. 이 경험은 이후 재미한인사회 결집을 위한 기반이자 그 결집을 와해시킬 여지로 남았다. 이 글을 통해 이러한 북미 국민회 내부 세력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과 그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북미 국민회의 내부 소수 세력은 1938년 중일전쟁 이후 미국 내에서 적극적인 반일활동을 요구하면서 나성한인연합중국후원회(이하 나성 중국후원회)를 결성하였다. 나성 중국후원회는 결성 초기 북미 국민회의 고문을 받는 일종의 산하기관이었지만, 1939년 들어 북미 국민회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1939년 8월 나성 중국후원회는 단체를 조선의용대후원회(이하 의용대후원회로 줄임)로 변경하고 1940년 1월 기관지 『의용보(義勇報)』와 자체 회관인 의용관을 확보하였다. 이때 분열한 재미한인사회는 해방 이후에도 통합되지 못했다. 따라서 북미 국민회와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1930~40년대 재미한인사회의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는 분열의 추동을 북미 국민회, 또는 재미한인사회 내부에서 찾았다. 이들의 관계를 선구적으로 연구한 최기영은 『의용보』를 중심으로 나성 중국후원회와 의용대후원회를 분석하였다. 그는 나성 중국후원회의 주도층이 북미 국민회와 홍사단 소수세력으로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에 공감’하고 무력투쟁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실력양성과 외교노선에 치중한 기존 한인사회와 구별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초기에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결국 재미한인사회 주류를 대표하는 북미 국민회와 대립하고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고 보았다.¹⁾ 최기영이 사상 차이를 갈등의 주요인으로 보고

1) 최기영, 1999, 「조선의용대와 미주한인사회-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11, 80~84쪽.

있다면, 홍선표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로 줄임) 인정 여부를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파악했다. 그는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의 협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세력이 내세운 주장을 분석하였다. 조선의용대 설립 이후 제기된 후원 문제에서 시작된 두 세력의 갈등은 협상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권위 인정 여부를 두고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이들의 협상은 상호이해보다 단절을 재촉하였다는 것이다.²⁾

기존 연구가 지적한 대로 이들의 갈등은 재미한인사회, 특히 북미 국민회의 맥락 안에서 사상 차이와 임시정부 권위 인정 여부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협상을 시도한 것 역시 재미한인의 통일이라는 대내적인 명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두 세력이 193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결과 대화 국면을 오간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이는 대내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시기 재미한인사회 내 역학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적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 관내에서 진행된 중국 관내 한인 혁명운동단체의 통일전선운동, 곧 한국혁명운동 통일적 7단체회의(이하 7당통일회의 또는 5당통일회의로 줄임)였다.³⁾ 1939년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의 추이와 재미한인사회의 갈등 양상을 동일한 맥락에서 놓고 보면, 갈등일변도로 보였던 북미 국민회와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의 관계가 왜 대화와 대결을 오갔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소수이지만 재미한인사회 일각의 유력한 세력이 되는 북미 국민회 내부 소수파의 형성과 이에 대한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대응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세 차례의 국면 전환을 통해 1939년 북미 국민회의 분열을 살펴보고 그 국면 전환 과정에서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북미 대한인국민회 내부 논쟁

1938년 1월, 중앙집행위원장 백 랄프(Ralph Paik), 총무 김 월라(金月羅, Willa Kim), 재무 김강(金剛, Kang Kim, Diamond Kimm)과 중앙집행위원 19명이 참여하는 나성 중국후원회가 결성되었다.⁴⁾ 이들은 모두 북미 국민회원이었다. 나성 중국후원회는 결성 직후부터 “각종 의연과 중국난민구제물품 모집, 일화배적 핀(pin) 판매, 미국 단체에 한인 연사 파견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⁵⁾ 그러나 조직 구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5월 6일 정기회의에서 나성 중국후원회는 회장 김 월라, 부회장 김강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⁶⁾ 이날 회의에서는 나성 중국후원회의 임원과 일반 회원의 활동이 침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초

2) 홍선표, 2015, 「1930년대 재미한인사회의 진보적 변화와 대응-중국후원회 결성과 조선의용대 후원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74~276쪽.

3) 1939년 한국광복운동자연합(광복전선)과 조선민족전선연맹(민족전선)의 7당통일, 5당통일의 전말은 강만길에 의해 규명되었다(강만길, 2003,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230~245쪽).

4) 「Boycott Movement is Growing」, 『신한민보』, 1938.02.10.

5) 「Boycott Movement is Growing」, 『신한민보』, 1938.02.10.

6) 「나성중국후원회-임원보선과 중요방침 결의」, 『신한민보』, 1938.05.12.

기에 비해 활동이 미약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성 중국후원회의 결성 배경은 북미 국민회가 중일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북미 국민회 회원 사이에는 ‘다른 단체’의 설립은 위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고,⁷⁾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도 모두 북미 국민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북미 국민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⁸⁾ 이런 이유에서 나성 중국후원회는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중앙상무위원회 선전위원 신두식(申斗澁, Doo Sik Shynn)을 고문으로 파견하자 이를 수용했다.⁹⁾ 북미 국민회 지도부 또한 “반일·반제국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항일민족통일 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나성 중국후원회의 강령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성 중국후원회의 설립과 그 활동을 일정 부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⁰⁾

1938년 7월 말, 북미 국민회 지도부 비판대열에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들도 합류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의 요구는 요컨대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임시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전통적 정책을 수정하여 미국 내 반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일본을 미국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재미한인사회의 독립운동열기를 고조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북미 국민회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무관하지 않았다. 북미 국민회는 1936년 6월에 착수하여 1938년 4월 완공한 국민회관 신축 공사에 상당한 재정을 소모했다. 대출 상황을 계속하면서도 여전히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형편이었다.¹¹⁾ 경제 상황에 따라 북미 국민회 운영비의 주 수입원인 북미 국민회 회원 의무금이나 신한민보 광고 대금의 수금도 불안정해졌다. 따라서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새로운 사업 전개에 소극적이었다.

나성 중국후원회는 북미 국민회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의제를 실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북미 국민회 주도의 적극적 반일운동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북미 국민회 명의로 중국특파원 파견과 시사연구위원회 구성 계획이 수용되었다. 조선의용대 창설 소식도 이미 재미한인사회에 알려져 있었지만, 관련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외면적으로 중일전쟁 이후 발생한 재미한인사회의 대응책 논쟁은 순조롭게 매듭지어진 것 같았다.

이들의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은 나성 중국후원회 주요 회원들이 북미 국민회 나성지방회 임원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다수가 전체대표대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였다.¹²⁾ 이는 북미 국민회 내부 소수 세력으로서 발언권이나 행동력이 제한되어 있던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이 북미 국민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에 실질적인 권력을 확보하여 정치세력화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¹³⁾ 이를 견제하기 위해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지금까지 중앙상무위원회 선전위원을 고문으로 임명해 관리하던 나성 중국후원회를 직접 통제하고자

7) 김탁, 「울도 씨의 글을 읽다가」, 『신한민보』, 1937.09.09.

8) 「나성중국후원회」, 『신한민보』, 1938.05.12.

9) 「1938년도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8.09.04,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46쪽.

10) 「Boycott Movement is Growing」, 『신한민보』, 1938.02.10.

11) 「1938년도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8.09.04,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07~109쪽.

12) 박영훈, 2021, 「1938년 재미한인사회의 갈등 속 신두식(申斗澁)의 역할」, 『사림』 77, 249쪽.

13) 박영훈, 위의 논문, 248~251쪽.

하였다.

1)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통제권 강화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나성 중국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먼저 내부 조직을 정비했다. 그 대상은 중앙집행위원이자 중앙상무위원회 선전위원이며 『신한민보』 주필 및 편집인이었던 신두식이었다. 신두식은 오랜 북미 국민회원으로 백일규(白一圭)의 신임을 받아 1935년부터 『신한민보』 주필로 활동해왔다. 이 시기 주필은 북미 국민회를 대표해 논설을 작성할 뿐 아니라 편집자이기도 했으므로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두식은 제3차 전체 대표대회에서 선전위원 보고로 나성 중국후원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¹⁴⁾ 『신한민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제3차 전체대표대회에서 선전위원이 『신한민보』 주필을 겸임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필을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¹⁵⁾ 신두식은 1939년도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주필직은 사임하였으며 김용중(金龍中, Yong-jung Kim)이 선전위원으로 호선되었으므로 중앙상무위원회에서도 물러났다.¹⁶⁾ 북미 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유일한 나성 중국후원회 지지자였던 신두식이 실각한 것이었다.¹⁷⁾

중앙 집행부와 기관지를 장악한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나성 중국후원회를 직접 겨냥했다. 나성 중국후원회는 여전히 1월 5일 한국인의 밤 행사,¹⁸⁾ 1월 20일 롱비치(Longbeach) 고철 수출 반대 시위등 자체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¹⁹⁾ 북미 국민회는 나성 중국후원회가 북미 국민회의 고문을 따르지 않는 문제, ‘공산당’ 문제를 논의하자며 1939년 1월 22일 공개간담회를 개최하였다.²⁰⁾

첫 번째 대화 국면의 시작이었다. 이 회의에는 북미 국민회 중앙상무위원회와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한인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주목적은 ‘공산당’ 여부 판명보다 나성 중국후원회의 임원 재구성이었다.²¹⁾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나성 중국후원회가 ‘이름과 실상이 맞지 않는다’며 그 임원을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직접 선정하고, 새롭게 구성된 나성 중국후원회 임원진은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14) 「제3차 전체대표대회 회록」, 1939.01.01, 『미주국민회자료집』 16, 215쪽.

15) 「제3차 전체대표대회 회록」, 1939.01.01, 『미주국민회자료집』 16, 223~224쪽.

16) 1939년도 북미 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집행위원장 송현주, 중앙상무위원회 총무 최진하, 선전위원 김용중, 구제위원 박재형, 교육위원 송종익, 실업위원 박원걸, 서기 김병연, 중앙집행위원 한시대, 김동우, 신두식 (이상 모두 중앙집행위원), 후보집행위원 김형순, 황사용, 김강, 정몽룡, 임일, 최능익.

17) 신두식이 물러난 이후 『신한민보』 주필은 총무 최진하가 맡고, 홍언(洪焉)과 이창희가 편집인으로 고용되었다(「제3차 전체대표대회 회록」, 1939.01.01, 『미주국민회자료집』 16, 223~224쪽).

18) 1939년 1월 15일 나성 중국후원회 주최로 열린 행사이다. 행사는 ‘중국후원’, ‘일화배척’의 표어를 내걸고 진행되었으며 한길수, 로스앤젤레스 중국 영사, 미국 하원의원의 연설 등이 계획되었다(「특별광고-한국의 밤」, 『신한민보』, 1939.01.12) 이후 북미 국민회 총무 최진하는 해당 행사에서 정산하고 남은 후원금을 김강, 변준호와 함께 중국인 구제회 간부에게 전달하였다(「코리아나이트 수입을 중국인 구제회로 넘겨」, 『신한민보』, 1939.01.26).

19) 홍언, 「잔인한 왜적의 현쇠 수출을 중지」, 『신한민보』, 1939.01.26.

20) 「중국후원회 문제로 토의」, 『신한민보』, 1939.01.26.

21) 박영훈, 앞의 논문, 254~255쪽.

임명한 고문의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북미 국민회 내에서 변화를 피하고 있었던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은 공개간담회 석상에서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요구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월 3일 정기회에서 신규 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²²⁾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당시 『신한민보』 편집인 중 한 명이었던 이창희(李昌熙)²³⁾의 글로 재구성할 수 있다.²⁴⁾ 이창희는 1939년 2월 16일 논설에서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의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모여서 간담할 때에는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그 후 날짜를 정하고 정식으로 조직하려고 모여서는 사상 충돌, 의견 충돌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였으므로 아무 결정도 못 하고 정회”했다고 표현했다. 2월 3일 정기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규 임원 선출이 파행했음을 보여준다.

양자의 주장에 대해 이창희는 북미 국민회와 나성 중국후원회가 하는 일에 공통점이 많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이창희는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나성 중국후원회의 활동을 인정하되, 나성 중국후원회 역시 북미 국민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북미 국민회 산하단체로 활동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²⁵⁾ 이후 나성 중국후원회는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신규 임원을 선출했다.²⁶⁾ 2월 3일 성과 없이 정회했으므로 이들이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한 것은 2월 10일이었을 것이다. 그 임원진은 회장 임 폴(Paul Lim), 부회장 김강, 영문서기 백 에스더(Esther Paik), 한글서기 이경선(李慶善), 재무 이창희, 선전부장 전경무(田耕武, Jacob K. Dunn), 일화배척부장 김 필립(Philip Kim), 감찰부장 황사용, 구호물품부장 김혜란(金惠蘭, Helen Kim)이었다. 잠시 화해의 분위기가 흘렀던 두 세력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입했다.

북미 국민회의 기관지인 『신한민보』에 고용된 편집인이자 나성 중국후원회의 재무로 선출된 이창희는 이전해 신두식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두 세력을 중재하기 위해 『신한민보』 지면을 활용하였다.²⁷⁾ 이창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만으로 성공을 쟁취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²⁸⁾ 그는 나성 중국후원회가 내세우는 주장이 재미한인사회 일반의 여론을 벗어났다고 비

22) 「UKS to Adopt New Policy」, 『신한민보』, 1939.02.02.

23) 이창희는 1927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조선 남감리교회에서 일하다가 1930년 도미했으며, 1935년 피바디 대학(Peabody College) 학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는 1937년부터 국민부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1938년 북미 국민회 로스앤젤레스 지방대회의 서기로 활동하는 등 북미 국민회의 일원이 되었다. 한편, 그는 1935년부터 1940년까지 북미 유학생회가 발간하는 『한인 유학생회보』(The Korean Student Bulletin)의 객원 편집인 중 하나로 활동하였다(「한인대학졸업생」, 『신한민보』, 1935.06.27 ; 「딜라노 국민부담금」, 『신한민보』, 1937.10.07 ; 「나성지방대회-명년도 각부 위원 선거」, 『신한민보』, 1938.11.17. ; “Editor, Contributing Editors”, *The Korean Student Bulletin*, 1935. January-February, p.2).

24) 이삼근(이창희), 「우리의 취할 태도」, 『신한민보』, 1939.02.16.

25) 이삼근(이창희), 「전체적 통일의 한 중요한 원칙」, 『신한민보』, 1939.02.23.

26) 「UKS Elects Officers」, 『신한민보』, 1939.02.23.

27) 이 시기에는 최진하가 홀로 주필과 편집을 맡은 것이 아니고, 원칙상 최진하가 주필이면서 흥언과 이창희에게 편집권을 맡긴 상태였다. 그러나 최진하는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드물었고, 편집인인 흥언과 이창희의 글이 주로 게재되었다. 이들은 정식 주필이 아니므로 신두식과 달리 자신의 본명이나 필명을 함께 기재하였다.

28) 이삼근(이창희), 「마음의 문을 열자」, 『신한민보』, 1939.01.19.

판하면서,²⁹⁾ 북미 국민회 지도부에게는 나성 중국후원회를 이해하고 포용할 것을 주장했다.³⁰⁾ 그는 논쟁하더라도 감정싸움을 자제하고 반드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³¹⁾ 이창희는 1939년 1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약 3개월의 짧은 시간을 『신한민보』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5편의 논설을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의 화해와 타협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게재했다. 그만큼 두 세력의 화합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1939년 3월 17일, 최진하(崔鎭河, C. H. Choy)는 2월 16일 중앙상무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2개조를 나성 중국후원회에 통지했다.³²⁾ 첫째, 나성 중국후원회가 어디까지나 북미 국민회의 부속 단체로서 중앙상무위원회 선전부에 속해있으며 ‘임시적’ 기관임을 명시했다. ‘영구적’ 기관을 부정하고 그 지위를 격하하는 것이었다. 둘째, 나성 중국후원회 내 5개 분과위원 5명은 북미 국민회 중앙상무위원회가 직접 임명하며, 각 분과의 부속 위원 4명씩 총 20명은 나성 중국후원회가 선정하되, 북미 국민회 중앙상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이례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였다. 이 결의에 대해 나성 중국후원회 회장 임폴은 북미 국민회 중앙상무위원회에 3월 28일, 4월 2일 두 차례 답변을 보냈다. 요컨대 나성 중국후원회는 북미 국민회와 고문 이상의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적절하며,³³⁾ 북미 국민회 ‘주의, 조직 원칙’을 따져 생각해보아도 나성 중국후원회가 스스로 임원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회신하였다.³⁴⁾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었다. 이 답신을 1939년 4월 2일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무 최진하가 낭독하였고 일부 중앙집행위원들은 나성 중국후원회를 비난했다.³⁵⁾ 이창희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는 북미 국민회 지도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신한민보』를 사퇴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공식 일정이 종료된 후 북미 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 주최로 두 번째 협상이 시작되었다.³⁶⁾ 회의가 시작한 후 북미 국민회 지도부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호(金呼, Charles Ho Kim)는 나성 중국후원회가 북미 국민회와 별도의 기관이라고 하면서도 북미 국민회 소유 재산인 국민회관의 주소와 전화를 허락 없이 쓰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호는 ‘한국인의 밤’ 행사에서 나성 중국후원회 측이 북미 국민회 대표의 참여를 ‘소개’한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며, 국민회관 주소지와 전화 역시 북미 국민회의 허락을 얻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미 국민회의 자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북미 국민회에 속한 단체라는 뜻인데, 나성 중국후원회 행사에서 북미 국민회 대표의 참석을 ‘소개’한다는 것은 두 단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그 행동이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5시 즈음에 시작한 회의는 자정까지 “사건에 대하여 무수한 이론이 있었고 누차 가부 표결을 번안”³⁷⁾하는 등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³⁸⁾ 마침내

29) 이삼근(이창희), 「우리의 취할 태도」, 『신한민보』, 1939.02.16.

30) 이삼근(이창희), 「전체적 통일의 한 중요한 원칙」, 『신한민보』, 1939.02.23.

31) 이삼근(이창희), 「의견충돌의 최후 심판관」, 『신한민보』, 1939.03.16.

32) 「1939년도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4.02,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79쪽.

33) 「1939년도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4.02,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79쪽.

34) 「1939년도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4.02,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80쪽.

35) 「1939년도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4.02,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80쪽.

36) 「1939년도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4.02,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94~198쪽.

37) 「1939년도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4.02,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95쪽.

38) 「1939년도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 15분 이전에 시작하였고 오후 5시 45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

김병연이 나성 중국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 중 북미 국민회 전체와 북미 한인 전체, 그리고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와 협력하는 일에 관해서는 반드시 북미 국민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근거하여 김호는 북미 국민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범위가 무엇인지 정하자고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5개조를 결의했다.³⁹⁾

이 결의안은 나성 중국후원회를 북미 국민회로부터 분리해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냈다. 나성 중국후원회는 북미 국민회 소유의 건물, 주소, 전화를 모두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의연금 모집 대상도 ‘백인사회’로 제한되었다. 이는 곧 나성 중국후원회가 안정적으로 모일 수도, 후원금이나 공적 연락을 받는 등 후원단체로서의 도구가 사라진데다 한인을 대상으로 의연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나성 중국후원회는 중국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이므로 한인을 대표할 수 없으며 조선의용대를 후원하려면 임시정부와 북미 국민회로 이어지는 계통을 지켜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김호가 문제 삼았던 ‘한국인의 밤’ 행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미 국민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한인을 대표한 것은 ‘한국인의 밤’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뉴욕 중국후원회였다. 뉴욕 중국후원회는 1938년 8월 18일 제2차 세계청년대회에 ‘한인 대표’ 현 피터(Peter Hyun)와 임창영(林昌榮, Channing Liem)을 ‘뉴욕한인연합중국후원회 대표’ 명의로 파견했으며, 『신한민보』 보도 역시 그렇게 이루어졌다.⁴⁰⁾ 이 당시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례는 1938년 11월 13일, 1937년 상하이에서 벌어진 시항(Sihang) 창고 전투에서 걸스카우트로 참전한 양혜민(Yang Huimin)⁴¹⁾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때 나성 중국후원회가 한인을 대표하여 그 환영회를 주최한 일이다.⁴²⁾ 당시 나성 중국후원회 회장 김 율라가 환영회의 주석을 맡았으며 그는 간단한 환영사를 한 이후에 “만찬회에 참여한 북미 국민회 중앙상무위원회 총무 최진하씨와 로스앤젤레스 국민회 청년부 회장 김 낙(Kim Nark)군과 기타 각 단체의 회장을 소개”했다. 만찬을 마무리하고 다시 환영사가 있었는데 이 역시 나성 중국후원회 부회장 김강이

하였다. 이후 회의가 끝난 시점이 이튿날 오전 1시이므로, 약 7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39) 「1939년도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4.02,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96~198쪽. 의결안 5개조는 다음과 같다. “① 나성한인연합중국후원회는 이따금 국민회와 공식적으로 합작하지 못할 관계가 있으니(중국후원회로써 보낸 공함 중 ‘중국후원회는 외국인 단체와 합작하여 국민회로써 정면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할 때도 있으니’를 근거함) 최단기 내로 그 통신 번지를 다른 데로 옮길 기간에는 총회관 번지를 사용함을 허락함. ② 나성한인연합중국후원회는 지금부터 국민회관에 와서 한인과 모이는 일은 허락하되, 외국인과 모이는 사건은 반드시 중앙상무위원회의 허락을 얻은 후에 모이며, 또 매번 집회실을 사용할 때마다 집회실 경비를 위하여 사용 비용을 낼 일. ③ 나성한인연합중국후원회는 백인사회의 의연금을 거두어 중국을 후원하는 단체이니 국민회 관할 구역 내에서 무슨 의연이던지 다소를 불구하고 국민회의 허락 없이는 의연을 걷지 못할 일. ④ 나성한인연합중국후원회는 대외선전에 재미한인 전체의 명의를 대표하지 못할 것. ⑤ 나성한인연합중국후원회는 중국에 있는 국제군을 재정으로 후원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회와 임시정부를 경유할 일.”

40) 「제2차 세계청년대회에 한인 대표 2인 참가」, 『신한민보』, 1938.08.25.

41) Tillman, Margaret, “Engendering Children of the Resistance: Models for Gender and Scouting in China, 1919-1937”,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Vol.13, Dec. 2014, p.136

42) 「국기를 드린 여영웅, 양혜민 여사를 환영」, 『신한민보』, 1938.11.17.

맡았다. 북미 국민회 총무인 최진하는 이 환영회에 참석했고 소개가 되었을 뿐, ‘주체’로서 드러난 일이 없었다. 이때에도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인의 밤’ 문제를 단순히 북미 국민회가 한인 대표로 소개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의 밤’ 행사에서 나성 중국후원회 측이 준비한 연극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의용대통신』 제9기에 실린 「나성 중국후원회 최근 활동 정형(北美韓人援華會之最新活動情形)」에서 ‘한국인의 밤’ 행사에서 나성 중국후원회가 ‘조선의용대’라는 제목의 연극을 했다고 서술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³⁾ 이는 나성 중국후원회가 행사 순서 중 6번째로 “한국 단편 연극, 중국 단편 연극”이 준비되어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과도 부합한다.⁴⁴⁾ 이는 첫 번째 협상에서 지적한 명실상부의 문제, 즉, 중국을 후원한다면서 조선의용대를 후원하는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북미 국민회가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하지 않은 조선의용대를 외국인인 모이는 자리에서 나성 중국후원회가 한인을 대표해 지지한 것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북미 국민회의 반발은 결의안 4조에서 나성 중국후원회가 대외선전을 할 때 한인을 대표할 수 없다고 한 것, 5조에서 조선의용대를 후원할 것이라면 임시정부와 북미 국민회를 경유할 것을 규정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갈등에 두 층위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나성 중국후원회의 정치적 세력 형성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다. 두 번째는 그 이전까지는 갈등 요인이 한인사회 내부에서 비롯되었다면, 1939년 초부터는 그 계기에 한인사회 외부 요인, 특히 중국 관내 민족운동단체의 역학관계도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결의안을 곧 실행에 옮겼다. 4월 6일 소집된 중앙상무위원회 특별회에서는 나성 중국후원회에게 국민회관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달 5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의를 통지했다.⁴⁵⁾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이후 처음 발간된 1939년 4월 13일 자 『신한민보』부터 국민회관의 대예당을 사용하려면 관리위원 김병연과 반드시 상의하라는 광고를 게재했다.⁴⁶⁾ 비록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음에도 협상을 통해 조성된 두 번째 대화 국면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2) 일시적인 화해 기류와 갈등 심화

두 번째 협상은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일방적 통지로 마무리되었지만,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나성 중국후원회 측에 일종의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4월 30일에 열린 나성 중국후원회의 무도회에 대한 예고 보도가 4월 13일 자 『신한민보』에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5월 4일 자로 보도가 되었다. 특히 4월 20일 자 『신한민보』에 조선의용대의 단체사진과 “우리의 임시정부 소재지에 본부를 두고 중국 군대와 같이 왜적을 물리치는 한국의용대, 우리 재미한인은 임시정부를 후원하여 조선의용대를 도우시다”⁴⁷⁾라는 설명글이 게재되었고 김원

43) 민산적(民山摘), 「北美韓人援華會之最新活動情形」, 『조선의용대통신』 제9기, 1939.04.11.

44) 「특별광고-한국의 밤, 중국후원, 일화배척」, 『신한민보』, 1939.01.12.

45) 「중앙상무위원회의 중요결의안」, 『신한민보』, 1939.04.13.

46) 김병연, 「총회관 대례당-빌려 쓰거나 세를 내어 쓰려거든」, 『신한민보』, 1939.04.13.

47) 조선의용대의 단체 사진은 『신한민보』 1939년 4월 20일 자 2면 중앙에 있다.

봉과 김구의 「동지·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에 관련된 기사도 게재되었기 때문이다.⁴⁸⁾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일시적인 화해 제스처는 무위로 돌아갔다. 6월 초에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들이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임원을 일제히 사퇴했기 때문이다. 1939년 6월 11일 개최된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특별대회에서 총무 김강, 서기 최능익, 학무위원 이경선, 구제위원 이운경, 감찰위원 광림대의 사면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로스앤젤레스 지방회는 같은 날 꺾적이 된 임원진을 보선하였다.⁴⁹⁾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들이 로스앤젤레스 지방회를 일제히 떠난 것은 이들과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관계가 단절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했다. 적대감도 극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국제 자선기관인 ‘국제관(International Institute)’⁵⁰⁾이 나성 중국후원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기관 내에서 나성 중국후원회가 후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⁵¹⁾ 나성 중국후원회 회원 중 일부는 국제관의 결정이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방해 공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⁵²⁾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들이 북미 국민회 지도부를 불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두 세력은 결별에 가까운 관계였지만, 두 세력 모두 여전히 중국 관내 한인 민족운동단체가 통일되면 북미 지역에서도 통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따라서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나성 중국후원회와 다시 교섭할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다. 특히 김구가 중앙집행위원장 송헌주에게 보낸 1939년 5월 18일발 서신은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다시 나성 중국후원회에 접촉할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다.⁵³⁾ 서신의 전달 시일이 약 17~37일인 것을 고려하면,⁵⁴⁾ 이것은 5월 18일 발송되어 6월 초중순 송헌주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서신에서 김구는 자신이 그동안 김원봉을 공산주의자로 오해하여 접근을 피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조사해보니 민족전선연맹 내 공산주의 단체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이하 해맹으로 줄임)과 조선전위청년동맹(이하 전맹으로 줄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비로소 김원봉과 약속하고 통합운동을 제창”했다고 전했다.⁵⁵⁾

김구는 통일방식 때문에 ‘일대 공황’이 일어나려 한다면 우려를 표시했지만, 통일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무엇보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조선의용대를 문제 삼은 것은 임시정부와 대립하는 민족혁명당과 김원봉 때문이었는데 김원봉이 김구와 같은 뜻이 있

48) 「조선의용대의 통신지」, 『신한민보』, 1939.04.20.

49) 「나성 지방회」, 『신한민보』, 1939.06.22. 보선된 이는 지방집행위원 박경신, 임인재, 김성낙, 이용선, 지방감찰위원 함병찬이었다.

50) 국제관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한인부’가 따로 있었다(「나성 국제관 사업 광고」, 『신한민보』, 1939.12.21). 또한, 한인들은 국제관이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국제일에 한인 참가-한국의 고유한 춤으로」, 『신한민보』, 1938.10.13).

51) 안필선, 「Jottings」, 『신한민보』, 1939.06.22.

52) 안필선, 「Jottings」, 『신한민보』, 1939.06.22.

53) 김구→송헌주, 1939.05.18, 『미주국민회자료집』 14, 237~238쪽.

54) 김구→최진하, 1938.02.13, 『미주국민회자료집』 14, 111~114쪽 ; 「임시정부의 중요통신」, 『신한민보』, 1939.09.21. 김구는 1938년 1월 5일에 발송된 최진하의 서신을 2월 12일에 받았다고 했다. 약 37일이 걸린 것이다. 1939년 8월 30일 보낸 서신은 9월 16일 도착하였으니 약 17일이 걸린 것이다. 『미주국민회자료집』에 수록된 다른 서신들의 수발신일도 이 기간과 대체로 비슷하다. 중국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통신상황에 따라 송수신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55) 김구→송헌주, 1939.05.18, 『미주국민회자료집』 14, 238쪽.

다면, 조선의용대로 인해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통신이 도착한 시기는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의 로스앤젤레스 지방회 임원 일제 사퇴와 맞물려 있었다. 다른 계기가 필요했다. 그 계기는 머지않아 찾아왔다. 1939년 6월 29일 총무 최진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변준호였다. 변준호는 최진하에게 나성 중국후원회의 의결사항이 “(북미) 국민회에 청구하여 로스앤젤레스 한인 전체를 소집하여 조선의용대를 후원하는 일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니 대회 소집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⁵⁶⁾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김구와 김원봉이 통일 합작을 선언하였으니 북미 국민회가 걷는 인구세와 국민부담금이 곧 임시정부와 조선의용대를 원조하는 것이므로 새삼 조선의용대만을 위해 따로 후원할 필요가 없다며 대회 소집 요청을 거절했다. 비록 대회 소집은 실패했지만, 나성 중국후원회의 의결과 변준호의 요청은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단절에 가까운 관계 악화에도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이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결의한 사항을 존중한다는 제스처였기 때문이다.

1939년 7월 9일, 최진하와 신두식이 샌프란시스코 지방회 임원회의 초청으로 한자리에 모였다.⁵⁷⁾ 표면상 북미 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의 두 위원이 만난 것이었다. 기사는 이들이 ‘회포를 풀었다’고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의 관계, 특히 나성 중국후원회를 지지하면서도 중앙집행위원직을 수행하던 신두식이 가지는 중간자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만남에서 일정한 의견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만나기 얼마 전 나성 중국후원회의 대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북미 국민회의 입장 설명도 함께 동반되었을 것이다.

다만 회동 이후 진척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 최진하가 투고한 「국민회 전도에 대해」라는 글도 이 회동에 대한 최진하의 반응을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⁵⁸⁾ 최진하의 글은 2개의 요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한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일본’이라는 적과 ‘독립’이라는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개인의 고집을 희생하고 다수 의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⁹⁾ 둘째, 한인사회 내의 여러 조직체, 대한여자애국단, 기독교청년회, 흥사단, 동지회, 북미 유학생회, 나성 중국후원회 등은 각각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부분적 단체’이며 북미 국민회는 북미 한인 일반을 대표하는 ‘전반적 단체’이므로 북미 국민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 개인의 고집을 희생하고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라는 첫 번째 요점은 나성 중국후원회가 북미 국민회 내부에서나 한인사회에서나 소수이므로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는 의미를, 그리고 나성 중국후원회 등의 단체들은 ‘부분적 단체’이고 북미 국민회는 ‘전반적 단체’라는 두 번째 요점은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에게 북미 국민회의 권위를 인정하여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북미 국민회의 통제에 따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두 단체의 관계는 경직되어 있었지만,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므로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나성 중국후원회는 북미 국민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대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북미 국민회는 나성 중국후원회

56) 「의용대후원에 관한 중상결의」, 『신한민보』, 1939.07.06.

57) 「최·신 양씨를 초대」, 『신한민보』, 1939.07.20.

58) 최진하, 「국민회 전도에 대해 (1~2)」, 『신한민보』, 1939.07.27 ; 1939.08.03.

59) 최진하, 「국민회 전도에 대해 (1)」, 『신한민보』, 1939.07.27.

60) 최진하, 「국민회 전도에 대해 (2)」, 『신한민보』, 1939.08.03.

의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의 진행 상황을 근거로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6월 초 상호 관계 단절에 가까울 정도로 극에 달했던 대결 국면이 다소 완화되고 세 번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었다.

3. 신진세력의 형성과 협상 결렬

1) 조선의용대후원회의 설립과 마지막 협상

1939년 8월 10일, 최진하와 변준호가 접촉하고 약 2달여 만에 『신한민보』에서 다시 나성 중국후원회의 행사 광고가 게재되었다. 8월 12일 로스앤젤레스 일본 영사관 앞에서 전개될 반일시위에 관한 것이었다.⁶¹⁾ 이 시위는 1월에 전개되었던 룡비치 고철 수출 반대 시위와 유사했다. 나성 중국후원회, 일부 중국인과 백인 단체들이 모여서 중국과 한국을 핍박하는 일본에 군사물자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위 내용은 『신한민보』 8월 17일자 기사에 보도되었고,⁶²⁾ 같은 호 영문란에는 해당 시위의 사진도 게재되었다.⁶³⁾ 1939년 8월 31일 자 『신한민보』에도 나성 중국후원회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소위 일미 친선의 탈을 쓰고 오는 굿월 왜 비행가”를 나성 중국후원회와 중국인, 백인 단체들이 글렌데일(Glendale)에서 규탄한다는 소식이었다.⁶⁴⁾ 이는 1939년 8월 26일 세계일주를 하는 ‘친선비행(goodwill flight)’을 목적으로 일본 항공기가 미국에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였다.⁶⁵⁾

한편, 나성 중국후원회는 1939년 8월 28일 조선의용대후원회(이하 의용대후원회로 줄임)로 전환하고, 그 발기회는 국민회관에서 열었다.⁶⁶⁾ 이들은 새로운 단체의 목적과 회칙을 이날 정했다.⁶⁷⁾ 북미 국민회 측은 발기인은 34명, 의무금 납부자는 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⁶⁸⁾ 나성 중국후원회 구성원은 대부분 의용대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나성 중국후원회가 ‘중국’에 제한되지 않고 조선의용대를 후원하겠다고 공언한 것이었다. 또한, 의용대후원회 발기회를 국민회관에서 개최한만큼, 두 세력의 관계도 다소 호전되었음을 의미했다.

정확히 어느 시기에 재미한인사회에도 소식이 도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8월 중 기장에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이하 광복진선으로 줄임)와 조선민족전선연맹(이하 민족전선으로 줄임)이 7당통일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⁶⁹⁾ 북미 국민회 지도부나 의용대후원회 구성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의용대후원회의 협상이 개최되기 이전에

61) 「광고-배일시위행렬」, 『신한민보』, 1939.08.10.

62) 「나성한인중국후원회의 왜 영사관 피케팅의 성적」, 『신한민보』, 1939.08.17.

63) 「The Picket Line」, 『신한민보』, 1939.08.17.

64) 「나성한인중국후원회는 굿월 비행가에게 피케팅」, 『신한민보』, 1939.08.31.

65) “Japan’s Goodwill Plane Returns”, Dec. 11. 1939, British Pathé

(<https://www.britishpathe.com/>), 2022년 5월 30일.

66) 「UKS in Korean Volunteer Army Drive」, 『신한민보』, 1939.08.24.

67) 「Volunteer Corps Organized」; 안필선, 「Jottings」, 『신한민보』, 1939.08.31.

68) 「1939년도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9.03, 『미주국민회자료집』 14, 213쪽.

69) 汪榮生->朱家驊, 「綦江에서의 韓國 7個黨 統一會議 經過報告書」, 1939.10.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22년 5월 29일.

의용대후원회의 향후 거취를 두고 최진하와 의용대후원회 발기회 간에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 관내의 통일전선운동을 계기로 대화 국면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1939년 9월 3일부터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다음날인 9월 4일 오후 9시 30분부터 북미 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 주최로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의용대후원회 구성원 간의 협의회, 즉 세 번째 협상이 열렸다.⁷⁰⁾ 재미한인사회의 분열을 막자는 공감대를 주고 받으며 잔잔하게 시작된 회의는 이내 의용대후원회의 존속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회의 이전에 이미 최진하와 의용대후원회 구성원 간에 일정한 연락이 오고 갔는데, 의용대후원회 측은 이전에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요구했던 대로 의용대후원회를 중앙상무위원회 산하단체로 편입하는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진하는 회의 석상에서 이미 북미 국민회가 금전을 모으고 있으므로 별도 단체가 필요 없다며 그 제의안을 거절하였다. 이경선이 회의를 시작하며 의용대후원회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호도 북미 국민회 이외에 다른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조하였다.

조선의용대 후원 방식도 논의되었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조선의용대 후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임시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의용대후원회 구성원들은 김구 등 광복직선이 장악한 임시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재미한인사회가 조선의용대를 직접 후원하는 방법을 고수하였다.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또한 김호가 조선의용대에 관한 송병조의 서신을 근거로 의용대후원회를 비판하자, 더 이상 타협이 어렵다고 여긴 김종립은 의용대후원회가 단독으로 행동하겠다고 결론지었다. 9월 5일 오전 1시, 3시간 30분의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이 돌아간 뒤 다시 모여 “임시정부에 글을 보내어 조선의용대후원회의 정형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는 조선의용대후원회의 일절 문자를 『신한민보』에 고쳐 다시 제작하지 말 것이며, 대예당 사용을 허락하지 말 것”을 결정하였다.⁷¹⁾ 이로써 1939년 마지막 대화 국면이 종결되고, 북미 국민회 내부 소수 세력으로서 활동하던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가 북미 국민회로부터 분리되었다.

회의 내용과 관련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김호가 회의 막바지에 언급한 송병조의 서신이다. 김호는 송병조가 조선의용대 내부 사정을 조사한 뒤 보내온 서신을 최진하로 하여금 낭독하도록 요청했다. 이경선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였지만, 김호는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송병조를 더 신뢰한다면 “(북미) 국민회의 정책은 임시정부를 최고 기관으로 삼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⁷²⁾

이 서신의 내용은 무엇인가? 서신의 전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이 서신이 민족혁명당이나 조선의용대가 공산주의 단체이며 임시정부를 옹호하지 않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고 추론했다.⁷³⁾ 비슷한 시기에 송병조가 하와이의 차경신에게 그러한 내용의

70) 북미 국민회는 김호, 송종익, 한시대, 최진하, 박재형, 박원걸, 김용중, 신두식, 김병연, 송현주 등 10명이, 조선의용대후원회 발기회 측은 회장 안석중, 총무 김종립, 그리고 발기자 황사용, 이경선, 변준호, 광림대, 김순권, 최능익 외 2명 등 10명, 총 20명이 세 번째 협상에 참석하였다(『1939년도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9.03, 『미주국민회자료집』 14, 225쪽).

71) 『1939년도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9.03, 『미주국민회자료집』 14, 230쪽.

72) 『1939년도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9.03, 『미주국민회자료집』 14, 229~230쪽.

73) 송병조→미상(북미 대한인국민회), 날짜 미상, 1939년, 『미주국민회자료집』 14, 239쪽. 이 서신은

서신을 보냈으므로, 이 서신 역시 동일한 내용일 것이라고 보았다.⁷⁴⁾ 따라서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송병조의 서신을 통해 조선의용대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임정을 부정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대화에 임했다”는 것이었다.⁷⁵⁾ 서신 내용에 대한 전제가 ‘공산주의’나 ‘임시정부 반대세력’이었으므로,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의 갈등도 사상적 차이 내지는 임시정부 권위 인정 여부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론에는 문제가 있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송병조의 서신을 통해서 새삼 민족전선,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1935년 민족혁명당이 처음 결성될 때부터 이들이 임시정부와 대립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민족전선에 공산주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최소한 1939년 5월 김구의 서신을 통해 알고 있었다.

『미주국민회자료집』에는 이 서신의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세 번째 협상에 앞서 진행되었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의용대후원회 발기회에 대해 논의할 때 중앙집행위원들은 최진하를 통해 이미 송병조의 서신을 읽었다. 김호가 의용대후원회의 설립 이유를 묻자 최진하는 “재중국의용대본부가 나성에 있는 그 소친자(所親者)에게 지부 설립을 위탁해서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⁷⁶⁾ 즉, 조선의용대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지지자들, 곧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미국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용대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송병조가 보내온 서신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송병조의 서신에 대한 이경선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언 역시 의용대후원회는 조선의용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설립된 것이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의용대후원회 구성원들이 성립선언문에서 자신들이 민족혁명당이나 조선의용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성했음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⁷⁷⁾ 요컨대,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의용대후원회의 주장과 무관하게 그들이 북미 국민회가 아닌 조선의용대 휘하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그 근거가 송병조의 서신이었던 것이다.

둘째, 의용대후원회를 북미 국민회 중앙상무위원회 산하단체로 편입해달라는 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의 제의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나성 중국후원회가 선전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는 것을 제의했었고, 이를 당시 회장인 임 풀이 거절한 바 있었다. 1939년 9월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들의 소속은 이제 나성 중국후원회가 아니었다. 나성 중국후원회가 조선의용대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단체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중국이 아닌 조선의용대를 후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이 먼저 북미 국민회 지도부에게 의용대후원회를 북미 국민회 중앙상무위원회 직속기관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이를 거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북미 국민회는 나성 ‘중국’후원회의 이름으로 ‘조선의용대’를 후원하는 실상을

1페이지만 남아있고 나머지 내용은 유실되었다. 남아있는 내용에서는 광복전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74) 최기영, 1999, 앞의 논문, 86쪽.

75) 홍선표, 2015, 앞의 논문, 274쪽. 홍선표는 송병조가 차경신에게 보낸 공함이나 북미 국민회에 보낸 공함이나 동일한 내용이라고 파악한 최기영의 논의를 받아들였다.

76) 「1939년도 제3계 중앙집행위원회 회록」, 1939.09.03, 『미주국민회자료집』 14, 213쪽.

77) 「朝鮮義勇隊後援會成立宣言」, 『조선의용대통신』 제28기, 1939.11.1.

지적하였다. 이에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은 북미 국민회의 지적을 역으로 수용하여 조선의용대 후원을 위해 단체명을 ‘조선의용대후원회’로 전환한 것이었다.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전유한 셈이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김구의 전언대로 7당통일회의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마무리되리라 전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에 대한 후원이 곧 조선의용대에 대한 후원이라는 논리가 타당하였다. 한편,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주요 인물인 신두식, 변준호 등은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 계속 인정해왔다. 다만, 이들은 임시정부가 민주주의에 기반하였으므로 민주적 절차로 당국자, 즉 행정부가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⁷⁸⁾ 이런 관점에서 7당통일회의의 결과는 임시정부에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가 해체·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 내 하나의 세력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로서는 7당통일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조직은 조선의용대뿐이므로 의용대후원회가 존재할 명분이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즉, 양측이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에 대해 갖는 견해나 희망 역시 엇갈렸다.

2) 중국 관내 한인 통일전선운동의 실패와 완전한 결별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의 세 번째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되고 약 2주가 지난 9월 16일, 김구의 서신이 북미 국민회 지도부에게 전달되었다.⁷⁹⁾ 공교롭게도 세 번째 협상이 열리기 4일 전, 즉 8월 30일에 발송된 것이었다. 세 번째 협상은 양측의 격한 감정이 드러날 정도로 치열한 논쟁의 장이었고, 결과적으로 소득 없이 서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로 합의를 봤으므로 결별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김구가 보내온 서신의 내용은 북미 국민회가 재차 의용대후원회와 교섭을 시도해볼 여지를 주었다. 서신에는 김원봉의 전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구는 “미주 한인 동포들이 의용대후원회를 조직하고 응원하는 것이 조선의용대원의 용기를 고무하므로 좋은 일이지만, 북미는 이미 국민회로 통일되었으므로 재미동포의 모든 일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 후원회에게 국민회 당국의 양해를 구해 행동하라 하였다”는 김원봉의 말을 전했다. 이미 독자적인 활동에 합의한 이후였던 만큼, 북미 국민회 지도부나 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이나 공식적인 협상을 다시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7당통일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김원봉이 두 세력을 중재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대결 국면에서 일시적인 소강상태가 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신한민보』의 의용대후원회 기사 보도였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의용대후원회에 관련된 기사를 『신한민보』에 절대 게재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지만, 1달이 조금 지나 그 결정을 번복한 것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의용대후원회가 10월 7일 오전 11시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일본 영사관 앞에서 중국인, 백인과 함께 태극기와 각종 표어를 들고 일화배척 시위를 했다는 것이었다.⁸⁰⁾ 이날 시위가 조선의용대 설립 1주년 기념식을 겸하여 거행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보도되었다.⁸¹⁾ 10월 19일 보도는 별도 기사 내용은 없고 L.A. 타임스(L.A.

78) 신두식, 「논설-정부와 당국」, 『신한민보』, 1938.10.06.

79) 「임시정부의 중요통신」, 『신한민보』, 1939.09.21.

80) 「조선의용대 후원회의 나성 일본 영사관에 시위」, 『신한민보』, 1939.10.12.

81) 「Koreans Picket-Japanese Consulate」, 『신한민보』, 1939.10.12.

Times)에 게재된 의용대후원회 시위 사진을 전제한 것이다.⁸²⁾ 이처럼 일본 영사관 시위 기사가 재미한인의 동정을 알리는 잡보(雜報)의 첫 번째 기사로 보도된 것이나, 의용대후원회의 시위 사진이 게재된 것은 이들의 갈등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김원봉의 증재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소강상태도 오래가지 못했다. 1939년 11월 1일발 임시정부 전보가 11월 중순 북미 국민회 지도부에 당도했다.⁸³⁾ 중국 관내 통일전선 운동이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임시정부 측의 설명은 요컨대 7당통일은 해맹과 전맹, 5당통일은 민족혁명당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해맹과 전맹은 자체 조직을 해산시켜야하는 통일방식, 민족혁명당은 토지국유화, 통일신당 당원자격 문제, 임시정부 존재 인정 여부와 조선의용대의 지휘권 문제 때문에 회의에서 탈퇴했다.⁸⁴⁾

이후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의용대후원회를 적대하기 시작하였다. 12월 30일부터 개최될 제4차 전체대표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논설 「새해를 맞으며」는 “과거 30년간 지난 일은 다 접어놓고 다만 작년 1년간 지난 일만 보더라도 자체 분규 정돈을 위해 미처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입으로는 통일을 부르짖지만은 실상 분열로 달아나며, 사사로운 감정을 풀기 위해 공동체의 뜻을 무시하니 대개 이 같은 괴현상이 이 같은 비상시기에 있는 것은 외국 사람을 대하기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 혁명 선현을 대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의용대후원회를 겨냥한 글이었다.⁸⁵⁾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도 실패하고, 북미 국민회 지도부도 『신한민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이상, 의용대후원회도 통합이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북미 국민회 자체를 탈퇴하지는 않았으나 제4차 전체대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사용은 뉴욕 지방회의 대리 대표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회의장에 오지 않았다.⁸⁶⁾ 중앙집행위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이경선은 총 3표를 받아 후보집행위원에 선출되었고, 황사용은 2표를 받았지만 전체대표대회에도 불참했으며 이후 중앙집행위원회 등 북미 국민회 공식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3년간 중앙집행위원직을 맡아왔던 신두식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⁸⁷⁾ 의용대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고, 이들을 지지하는 소수의 북미 국민회 회원만이 남아있었다.

이듬해인 1940년, 의용대후원회는 자체 회관인 의용관(義勇館)과 기관지인 『의용보(義勇報)』를 확보하여 독자 활동의 기반을 완성하였다. 의용관은 국민회관과 마찬가지로 웨스트 제퍼슨 대로(1817 W. Jefferson Blvd.)에 위치하였는데, 국민회관(1368 W. Jefferson Blvd.)으로부터 10블럭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인근에 나성한인남감리교회((1616 W. Jefferson Blvd.), 나성한인장로교회(국민회관과 주소지는 동일), 흥사단소(3421 S. Catalina St.), 한인 유학생이 많았던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은 물론 한인 상점과 가옥이 모여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용대후원회 역시 로스앤젤레스 한인 커뮤니티의 핵심 지역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의용대후원회는 『의용보』를 통해 의용대후원회가 임시적 기관이며 북미 국민회와 대결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진 이상,⁸⁸⁾ 두 세력

82) 「Scene of Koreans Picketing Japanese Consulate」, 『신한민보』, 1939.10.19.

83) 「통일에 관한 중요통신-칠당의 내용과 및 그 주장」, 『신한민보』, 1939.11.30.

84) 강만길, 앞의 책, 243~245쪽.

85) 「새해를 맞으며」, 『신한민보』, 1939.12.28.

86) 「1940년 제4차 전체대표대회 회록」, 1939.12.30, 『미주국민회자료집』 16, 253쪽.

87) 「1940년 제4차 전체대표대회 회록」, 1939.12.30, 『미주국민회자료집』 16, 276~279쪽.

의 완전히 결별은 명백했다.

4. 맺음말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의 관계는 복잡미묘했다. 한국 독립과 민족 해방, 일본 제국주의의 파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나 정세를 바라보는 의견의 차이는 상당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 협상을 시도하고 대결 국면을 타개할 명분이 있다면 기꺼이 대화에 나섰다. 세 번의 대화 국면은 북미 국민회 지도부와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구성원의 입장 차이로 끝났지만, 세 번의 대결 국면을 완화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광복진선과 민족전선 간 통일전선운동의 영향이 컸다. 1939년 북미 국민회의 분열 과정은 갈등일변도가 아니었으며 대화와 대결 국면 전환의 반복이었다.

첫 번째 국면에서는 첫 번째 협상 이후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통제 강화와 나성 중국후원회의 반발이 맞부딪혔다. 중재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두 세력은 물리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한인사회 통합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대화 국면이 열렸다. 두 번째 협상에서도 두 세력은 견해차만 확인했으며 북미 국민회 지도부는 오히려 나성 중국후원회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재미한인사회 내부에서 대화를 이끌어낼 추동력이 사라졌을 때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 소식이 전해져왔다. 김구와 김원봉이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조성된 세 번째 국면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두 세력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분열하였다. 김원봉의 중재로 일시적으로 갈등이 완화되었으나 곧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이 실패하면서 두 세력의 관계는 곧 단절되었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나성 중국후원회에 대해 누차 지적했던 것은 ‘나성 중국후원회’의 ‘명실상부’의 문제였다. 반일 운동이라는 행위는 그대로였지만, 후원의 대상이 ‘일본과 전쟁하는 중국’에서 ‘임시정부와 대립하는 조선의용대’로 바뀌었다는 문제제기였다. 중국 관내에서 진행되는 통일전선운동에서 희망적인 관측이 제기되자 북미 국민회 지도부도 『신한민보』 보도와 물밑접촉 등으로 관계 개선을 꾀했다. 나성 중국후원회·의용대후원회 역시 그러한 정세에 맞추어 북미 국민회 지도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선의용대후원회’로 단체명을 바꾸어 기존에 제기된 ‘명실상부’의 문제도 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의용대를 후원하는 방법을 놓고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북미 국민회 지도부 측은 의용대후원회가 조선의용대의 요구로 설립된 단체라는 의심도 품고 있었다. 결국 세 번째 협상도 소득 없이 종결되었다. 여전히 중국 관내 통일전선운동이 진행 중이었고 김원봉의 중재도 있었으므로 대결 국면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1939년 11월, 중국 관내의 통일전선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두 세력은 더 이상 통합을 시도하지 않았다. 중국 관내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88) 「질의응답」, 『의용보』, 1940.3.10.

동안에는 모든 한인의 역량 집중이라는 대의명분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세 번의 국면 전환 과정에서 이미 누적된 감정의 골이 깊었던 탓이다.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신한민보』, 『The Korean Student Bulletin(한인유학생회보)』, 『독립』, 『의용보』, 『朝鮮義勇隊通信』.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2005, 『미주국민회자료집』 13·14·16, 경인문화사.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0·3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XXII) : 美洲篇(4) 미주한인민족운동자료』, 공훈전자자료관.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XXIV) : 美洲篇(6) NAPKO PROJECT OF OSS』, 공훈전자자료관.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XXX) : 美洲篇(8) OSS 재미한인자료』, 공훈전자자료관.
“Doo Sik Shynn Deportation Case” series, Korean American Digital Archive.

2. 저서

강만길, 2003,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김원용 저, 손보기 편, 2004, 『재미한인 50년사』, 해안.
방선주 저, 방선주선생님저작집간행위원회 편, 2018,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선인.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정병준, 2015,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들베개.
홍선표, 2011,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홍선표, 2012,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표상 김호』, 역사공간.
Cha, Marn J., 2010, Koreans in Central California(1903-1957), Marylan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3. 논문

김선아, 2018, 「재미한인 崔鎭河의 독립운동」, 『군사사연구총서』 7.
박영훈, 2021, 「1938년 재미한인사회의 갈등 속 신두식(申斗滉)의 역할」, 『사림』 77.
박준현, 2015, 「재미한인 변준호의 미주독립운동과 사회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72.
윤종문, 2013, 「항일투쟁기 郭林大의 在美獨立運動」, 『역사연구』 24.
이명화, 2012, 「재미실업가 김종립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정병준, 2004, 「1940년대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노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정병준, 2004, 「김용중(金龍中)의 생애와 통일·독립운동」, 『역사문제연구』 12.

- 정병준, 2005, 「金乎의 항일독립운동과 정치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3.
- 최기영, 1999, 「조선의용대와 미주한인사회-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근대사연구』 11.
- 최기영, 2004, 「1930~40년대 미주 기독교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李慶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0.
- 최기영, 2015, 「宋憲澍의 재미민족운동과 한인단체 연합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
- 홍선표, 1996, 「1930년대 在美韓人の 統一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 홍선표, 2015, 「1930년대 재미한인사회의 진보적 변화와 대응-중국후원회 결성과 조선의용대 후원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 Tillman, Margaret, 2014, “Engendering Children of the Resistance: Models for Gender and Scouting in China, 1919-1937”,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Vol.13, Dec.
- Yang, Eun Sik, 1990, “Korean Revolutionary Nationalism in America : Kim Kang and the Student Circle, 1937-1956”, *California Sociologist*, Vol.13.

박영훈, 「1939년 북미 대한인국민회의 분열과 그 귀결」에 관한 토론문

박준현(국가보훈처)

1. 필자께서는 1939년 나성 중국후원회와 국민회 지도부간의 갈등과 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 제목에 1939년을 명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 그룹의 갈등은 1939년이란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고 종결된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성 중국후원회의 리더중 한사람인 변준호는 이미 1930년대 초 시카고에서 김호철 등이 주도해서 만든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에 참여하여 당시 국민회 지도부와 마찰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변준호는 신한민보 시카고 지국에서 근무를 해서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의 입장을 신한민보 지면에 자주 노출시켰고 이러한 급진적인 활동과 더불어 김경에 대한 500불 강제사건 및 팜플렛 설화에 얽혀서 결국 경찰 체포 및 지도부에 강한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¹⁾

변준호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후원회를 이끌고 그와 함께 행동했던 이들은 청년수양조직인 흥사단에서도 좌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즉 이 두 그룹의 갈등의 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193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러한 흐름없이 바로 대한인국민회의 분열부터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연원으로 한인 지도자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잉태된 것인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또한 나성 중국후원회는 북미 국민회가 재정문제로 반일운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도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1936년 7월 5일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에서 열린 대의회에서 미주 한인단체들의 합동과 임시정부에 재정후원을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현장 또한 수정되었습니다. 이때 총회관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옮길것이 결정되었고 총회장제도에서 집행위원장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²⁾

이 집행위원 체제로 김호, 김형순, 한시대 같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재미한인사회의 리더였던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등이 모두 모습을 감춘 1920년대 중후반 이후 1930년대에 접어들면 이전과는 다른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리더로서 자처하게 됩니다. 김호, 한시대, 김경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상업활동을 통해 한인사회내에서 부를 쌓았고 그만큼 대한인국민회에 애착을 갖고 많은 기부를 하여 조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될 지점이 대한인국민회가 탄탄한 재정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1) 고정휴, 2010, 「1930년대 미주 한인사회주의운동의 발생 배경과 초기 특징-시카고의 재미한인사회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4 ; 방선주, 2018, 「김호철과 사회과학연구회」,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선인 참조.

2) 김도형, 2021, 『미주 한인사회의 한국독립운동』, 역사공간, 55-56쪽.

이끌어나간건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 초창기에 수만불을 보냈던 극히 짧은 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흥언이 모집한 특별의연금 및 북미 하와이 멕시코 한인들이 합심하여 낸 의무금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뒷받침되었던 특정시기 이후로는 이러한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납부한 의연금등으로 조직운영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뇌부의 문제로 재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재정 부족이 곧 현실이었다는 점, 총회관 이전과 동시에 임시정부 지원안은 이미 채택된 사안이었다는 점, 또한 해당 시점에 세계대공황을 겪고 손실이 컸던 한인 사회를 재건해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듯 싶습니다.

3. 또한 글 곳곳에 대결, 적대감 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표현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와 북미를 아우르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필자의 평가대로라면 사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결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한인은 미국이라는 큰 국가의 소수를 차지할 따름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을 겪으며 사는 현실속에서 잠깐의 대립이 있다고 한지언정 그것이 곧 영원히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논조를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